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 KOSCA LETTER

열정을 가진

031

사람들의 이야기

| KOSCA MESSAGE

| KOSCA NEWS

| KOSCA INFO

| KOSCA TODAY

| KOSCA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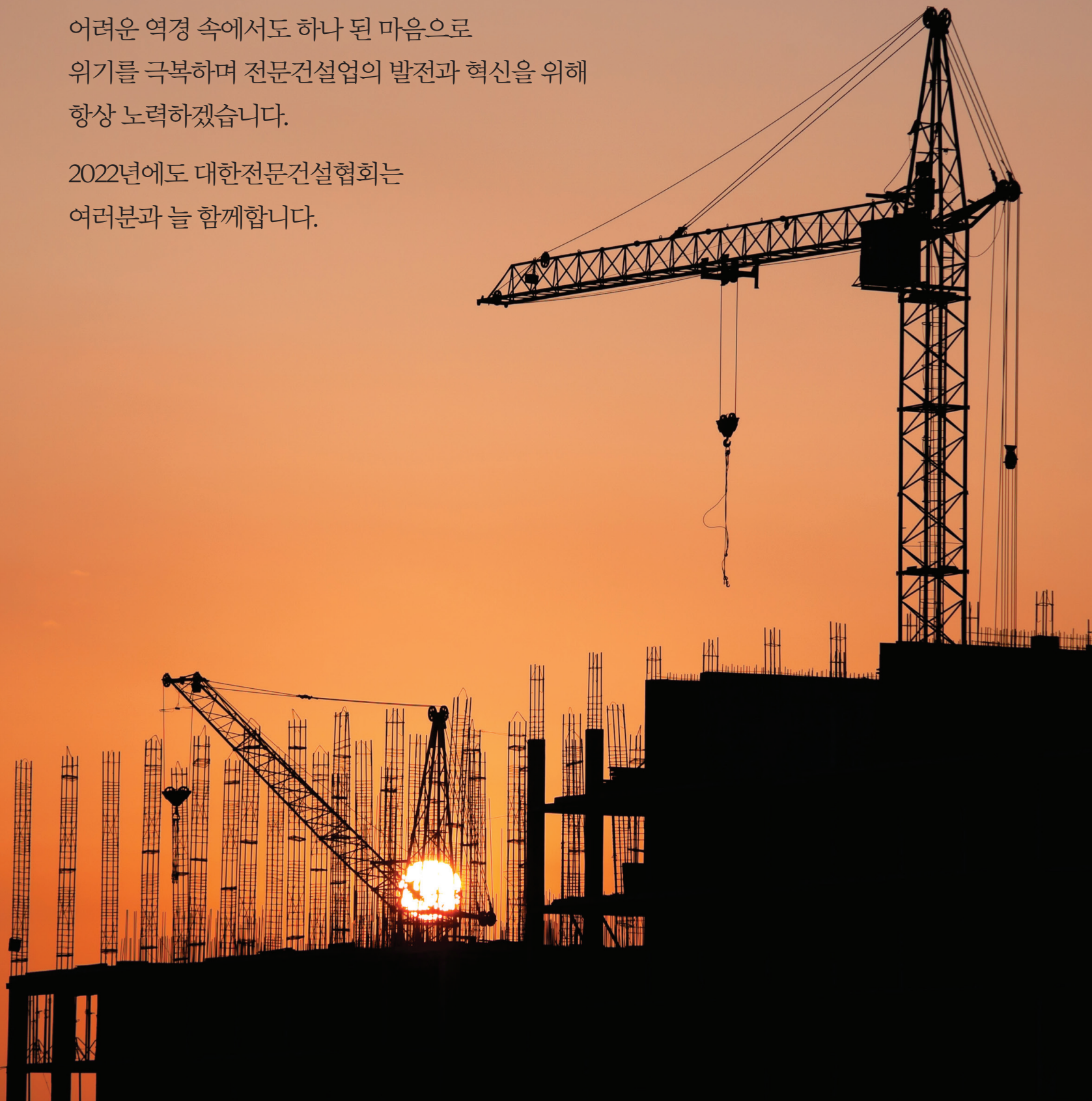


임인년의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액운을 막아주는 검은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받아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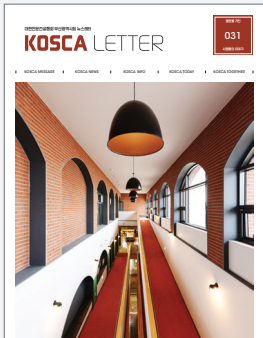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 contents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KOSCALETTER Vol.31**

표지이야기 알로이시오 기지1968  
(2021 부산 건축상 대상 수상작)  
발행인 회장 김세원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사진제공 부산광역시

## KOSCA MESSAGE

- 04 **신년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세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윤학수  
부산시의회 의장 신상해  
부산광역시 교육감 김석준

## KOSCA NEWS

- 08 **협회 소식**  
18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23 **특허 및 신기술 소개** 2021년 4/4분기 신기술 현황

## KOSCA INFO

- 24 **전문건설인의 삶** 건삶인 제59호 - (주)청산산업 대표이사 강성구  
건삶인 제60호 - (주)천진 대표이사 심재복  
28 **건설산업정보** Section 01 - 법령개정  
Section 02 - 회원사안내  
69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72 **특별기고 건강관리** 단순 가슴 방사선 사진으로는 놓치기 쉬운 암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74 **그것이 알고싶다** 하도급 분쟁 해법

## KOSCA TODAY

- 75 **회원사 현황**  
78 **협회·조합 소식** KOSCA 중앙회·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시회 2022년 1/4분기 주요일정 안내  
79 **2022년 건설업 교육**  
80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동절기 안전보건관리(폭설, 강풍 및 결빙)

## KOSCA TOGETHER

- 82 **부산의 명소** 영도대교  
83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  
84 **소통하는 문화공간** 힐링 무비, 힐링 북  
86 **친환경 골킵**  
87 **슈퍼 푸드 사진**  
88 **취미의 발견**  
89 **틈새회화**  
90 **독자와 함께** 회원사 참여 마당(독자의견 및 퀴즈)





##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김 세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떠오르는 새해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이를 거듭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희망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2022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대업종화, 상호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예상되는 혼란과 우려는 장기화 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우리 전문건설업계에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과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022년은 보다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크고 작은 시련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꿋꿋하게 본연의 자리를 지켜내며, 건설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추어 섰을때에도 우리는 건설산업의 최일선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멈춰서고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 우리만의 방식으로 화합과 협력을 통해 오늘날의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 그 중심에는 우리 전문건설인들이 있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큰 횃불이 되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부푼 기대 속에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울 한해, 힘차게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소원성취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윤 학 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2년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전문건설인 모두가 더 크게 발전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도 협회는 더 알찬 사업으로 전문건설인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지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건설 자재비 및 유가상승, 정부에서 추진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종합과 전문의 상호시장 개방 등으로 우리 전문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중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전문건설인들의 뜨거운 성원과 변하지 않는 지지가 있었기에 어려운 중에도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Re-start하는 각오와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Re-start,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혁신하여 다시 힘차게 발을 내딛는다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혁신의 시작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은 과거에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며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를 즐기며, 철저한 자기혁신, 기업문화의 혁신, 일하는 방식의 혁신, 창조의 혁신을 통해 우리업계의 위기를 정면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올해의 화두는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의 강력한 산업재해 감축 의지가 본격적으로 건설현장에 접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협회도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정부와 현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과잉처벌과 같은 불합리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상호시장 개방으로 우리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중앙회는 상호시장 개방으로 무너진 전문건설업의 업역 회복 등을 위한 각종 사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3월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하게 될 대선과정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 대선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우리업계의 위상 강화와 권익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협회가 추진하는 업무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전문건설인의 뜨거운 열정과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이 함께 해, 하시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성취되고 늘 건강과 웃음이 활짝 피는 날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의 도약과 발전 위해 중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희망으로 빛나고 가정에도 행복한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도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지역경제는 세찬 바람에 흔들렸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숨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탈부산도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도 고군분투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등 미래사업을 착착 진행시키며 위기 속에 기회를 만드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지역경제 불안 등 도전적인 경영 환경 아래서 전문건설업계에도 넘어야 할 고비와 헤쳐 나가야 할 가시밭길이 산적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 뒤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투지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기회의 바다로 이끌어 준 빛나는 등대였습니다.

지금 역시 우리는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역량과 지혜를 믿습니다.

부산시의회도 2022년 부산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중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북항이 온전히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재창조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도 힘차게 견인해 수도권 일극체제에 반드시 균열을 내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시의회의 전진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시의회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壬寅年)의 힘찬 기운과 더불어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번창과 모든 회원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성한 검은 호랑이띠 해의 기운에 힘입어 부산전문건설인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더욱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세원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6년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건설문화 창조에 앞장서며 부산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건설경기 침체의 위기 속에서도 협회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과 건설공사 제도 개선 및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아울러 2011년부터, 부산의 교육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교육 메세나 활동을 지속 펼치며,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고,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교육시설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나눔 문화를 확산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시는 협회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 교육을 향한 새로운 도전과 그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2022년을 부산 미래 교육이 본격 출항하는 원년으로 삼고,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에 부산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미래 교육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협회 회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쪼록 임인년(壬寅年) 새해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희망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번창과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회의 및 행사

### 01 2021회계연도 제2차 임원연석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30일(11:00/서면 월강초밥 4층 회의실)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회계연도 제2차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코로나19로 한동안 함께 자리하지 못한 임원사들이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 02 2021년 제2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1일(07:00/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부산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회는 부산시회 여찬모 자문노무사를 초빙하여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무관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조찬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방역과 마스크 착용, 참석자 좌석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킨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강연이 끝난 후 협회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여찬모 노무사에게 '감사의 글'과 '캐리커처'를 전달했다.



### 03 2021회계연도 회장단 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0일(11:20/기장 진품물회 2층 회의실) 「2021회계연도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회장단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주요 현안사항과 2022년도 협회 주요사업계획에 따른 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 04 2021년 대표회원 연수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8일 남해와 사천일대에서 임원 및 대표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대표회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순연되다 정부의 방역단계 완화로 어렵게 개최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방역과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킨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제12대 임원과 대표회원간의 화합 및 친목도모와 함께 협회와 부산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역사문화탐방으로 남해 보리암, 사천일원을 둘러보며 대표회원의 견문을 넓히는 뜻깊은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 활동

#### 01 정동만 국회의원 간담회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 및 회장단 등은 10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인 정동만 국회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올해부터 전문·종합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종합의 일방적인 전문공사 진출로 영세 전문건설 사업자들은 일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참여할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을 면제하고,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에정금액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관급자재비와 부가세를 제외한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제한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동만 국회의원은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애로사항인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02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 및 회장단은 10월 28일(16:00 / UN평화기념관) 박재범 남구청장과 부산 남구 소재 회사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실시공을 전담하며 부산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부산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를 실사용하는 부산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되어야 하므로, 부산전문건설업체의 수주를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더불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남구는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감독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및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70% 이상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산사회는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시공 예방, 안전의식 확립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03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오찬 간담회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11월 11일 이태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고통 받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건설노조의 불법 노동행위로 실시공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 가중되는 만큼, 건설노조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현장 조사 및 조치 강화를 건의”했다.

이에 이태휘 소장은 “부산지역 하도급불공정거래 신고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전문건설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조속히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적극 활용하여 건설노조의 불법 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04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 실시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17일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회원사의 고충해결과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을 실시했으며, 회원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법률·노무분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이 날 상담에서는 부산사회 이윤근 자문변호사가 발주자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담했으며, 여찬모 자문노무사는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및 교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관리,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분쟁 등 노무분야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다.



**05 서병수 국회의원 간담회**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 및 회장단은 11월 22일 서병수 국회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침체된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에 적극적인 동참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등 부산전문건설업계의 현안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서병수 국회의원은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부산사회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06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참석**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6일 「2021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부산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현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부산광역시 이병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도시계획실장 및 건설관계관, 건설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부산사회는 지역건설산업 발전 안건으로 「부산광역시-건설대기업 간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을 건의했다.

이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지역 공사에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율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나, 전문건설사업자의 2020년 건설공사 실적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발주 건설공사(공공+민간)에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는 54.27%에 불과한 실정인 만큼, 부산의 대형 건설공사는 건설대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고 있는 만큼, 부산건설산업의 활성화와 하도급 참여율 향상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부산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건설대기업 대표들과 부산광역시장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를 홍보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07 2021년 하반기 대형공사장 현장방문조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장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등 부산지역 내 8개 대형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대금지급 적정여부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와 현장대리인 적정배치 및 상주여부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자재·장비 참여 현황을 점검하여 부산 전문건설사업자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토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부산사회는 공종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 08 부산지역 공동주택 선진화 업무협약식

부산시회(회장 김세원)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회장 김병직)는 12월 7일(14: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부산지역 공동주택 선진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산시회 회장단 및 감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부회장단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부산 소재 공동주택과 지역 전문건설업 상생을 위해 △간담회 및 공동사업 추진 △공동주택 건설공사 무등록 시공 근절 및 부산전문건설사업자 참여 확대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견실시공을 통한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예방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 및 정보교환 등 양 기관이 각 분야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협력하는 것이다.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공사의 주축이 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만큼, 오늘 협약을 계기로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병직 부산시회장은 “공동주택 공사 발주시 무등록 시공을 근절하고,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내용에 맞는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하는 등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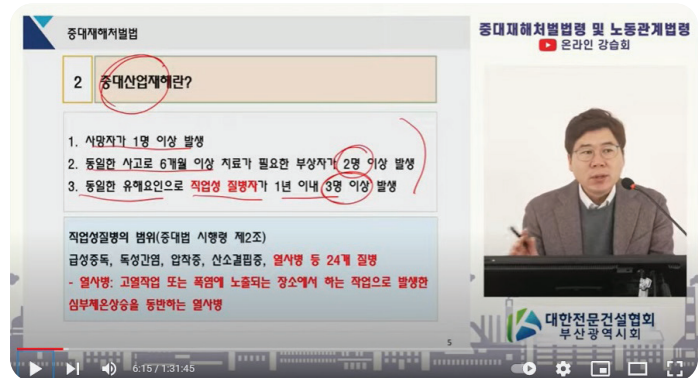


### 09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노동관계법령 온라인 강습회」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9일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노동관계법령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온라인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 설명과 임금명세서 교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달라진 노동관계법령 설명 등에 협회 중앙회 최정일 자문노무사가 교육을 실시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부산시회는 이 날 교육을 시청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교육교재를 홈페이지 게재하였으며, 강의는 부산시회 유튜브 채널(KOSCA부산)에서 상시 시청이 가능하다.



**1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간담회**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 및 부회장은 12월 16일 부산광역시 이병동 건설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의 지속적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타 발주기관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실시공을 전담하는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병동 건설본부장은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산지역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11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간담회**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12월 13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 박수생 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 보호·육성을 위해 “상수도 바로서비스팀 운영사업 및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가 필요한 소규모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이 없는 전문공사이므로 실시공을 전담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만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줄 것”과 “2억 원 이상의 단순 상·하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의 경우에도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으로만 제한 발주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에 박수생 본부장은 “건설공사의 실시공자는 전문건설사업자이므로 상수도 바로서비스팀 운영사업 및 단가계약 공사 등의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12 이헌승 국회의원 간담회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 및 회장단은 12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이헌승 국회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올해부터 전문·종합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종합의 일방적인 전문공사 진출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일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고사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며, “금번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육성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헌승 국회의원은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전문·종합의 상생·발전과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육성을 위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한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회장등정

### 01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 「중앙회 회원부회장 선출」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이 협회 중앙회 '제12대 회원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1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중앙회 제12대 윤학수 회장을 도와 협회의 화합과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회원사의 목소리가 중앙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도 전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회 회원부회장의 임기는 중앙회 회장의 임기와 같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다.



### 02 부산사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장 수상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그동안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과 종합건설업계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에, 김세원 회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전문건설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종합건설업계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공헌활동

### 01 부산진구 소외계층 돕기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2일 서병수 국회의원과 함께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 부산진구협회를 방문하여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따뜻한 세상만들기 연탄나눔 성금' 5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협회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02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외 2개 기관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4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장애인복지관(동래구 소재)을 방문하여 동래구장애인복지관(관장 여동훈), 동래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하소연),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정) 이상 3곳의 기관에 총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03 동래구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돕기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4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청장 김우룡)을 방문하여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우리동네 이웃사촌,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협회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04 2021 사랑의 연탄나눔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30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독거노인과 재가 장애인 등을 돕기 위해 연탄 20,000장(1,700만원)을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철)을 통해 동구 좌동 매축지 마을에 전달했다.

김세원 회장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감염병의 확산으로 예년에 비해 도움이 손길이 많이 줄어든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05 남구 김장나누기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30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청장 박재범)을 방문하여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지원금」 500만 원을 남구새마을부녀회를 통해 전달했다.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협회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꾸준히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06 수영구 희망다리놓기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청장 강성태)을 방문하여 수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다리 놓기 사업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협회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꾸준히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07 부산진구 김장 나눔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3일 이헌승 국회의원과 함께 부산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회장 고대규)를 방문하여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김장나눔 지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협회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08 부산노인복지진흥회 노인복지 지원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3일 이헌승 국회의원과 함께 (사)부산노인복지진흥회(회장 김만물)를 방문하여 「부산지역 노인복지 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기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협회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09 부산 다비다모자원 모자가정 돕기 성금 전달**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7일 부산시 다비다 모자원(원장 임은희)을 방문하여 「저소득층 모자가정 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기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협회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10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부금 전달**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7일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김석준 교육감에게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부산시교육청과의 교육결연활동의 일환으로 학습환경과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되어지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회는 그동안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교육메세나 활동을 2011년부터 꾸준히 전개하여, 협회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 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1 기장군 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0월 28일 정동만 국회의원과 함께 기장군 소재 기장장애인복지관과 기장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장애인의 복지혜택 지원을 위한 성금」 200만 원, 「체육부 학생 장학금」 3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 수주지원

01

### 「만덕-센텀 간 고속화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 축소 및 부산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그동안 부산지역의 각종 민자사업을 비롯한 대형건설공사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건설대기업에서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하도급 또한 자사 연고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함에 따라 매년 부산시민이 낸 1조 6천여억원의 자금이 서울 등 타 시·도로 역외 유출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만덕-센텀 간 고속화도로 건설공사」는 부산 최대의 민자사업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시공사인 건설대기업이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부산시회에서 2021년 1월경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동 현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율이 6.7%로 지역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10월 5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 롯데건설(주)을 방문하여 향후 발주되는 전문공사의 경우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가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된 70% 이상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02

### 자재가격 폭등 등에 따른 설계변경 협조 요청

최근 건설자재 값의 폭등과 건설장비 임차료,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의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수의 발주처와 원도급업체들이 대금조정 등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아 많은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적자시공 등 피해가 누적돼 왔으며, 일부 하도급업체에서는 폐업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16개 자치구·군에 실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원사업자인 건설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자재가격 폭등 등에 따른 설계변경 등 추가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설대기업 상위 100개사를 대상으로도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과 함께 부산전문건설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건설 자재가격 폭등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반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03

###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부산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수년간 지속되는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들은 건설공사 수주물량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경우 타 지역 종합건설사업자가 부산지역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자사의 연고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함으로써 부산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수주물량 확보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10월 21일 1,800여억 원의 부산지역 대형 공공공사인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에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가 70% 이상 될 수 있도록 동 공사를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 시공사인 (주)한진중공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04

###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부산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시공사가 선정된 조합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부산 전문건설사업자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부산광역시(건설행정과)와 함께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위해 수도권 건설대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들 건설대기업들은 자사 연고지 전문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고 있어, 부산시민의 분양대금 수천억 원이 수도권 등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역 건설장비 및 생산 건설자재를 사용하고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는 부산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됨을 강조하며, 부산광역시 및 조합, 시공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추진현황

추진일자	추진한 곳		비고
	재개발·재건축 조합	시공사	
2021.11.10	반여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SK에코플랜트(주)	
2021.11.22	당감1-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GS건설(주)	
2021.11.22	거제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롯데건설(주)	

05 **개량·보수·보강공사 해당 전문건설업 발주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개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는 도급·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그러나 부산지역 소재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단순히 유지보수공사라는 이유 또는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거나 신기술 및 특허가 설계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시설물유지관리업만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초 시공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이후라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몰아주기식 발주 또한 빈번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특허나 신기술은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 방법에 불과하고 기술사용협약 등을 통해 공사에 적용 가능하므로 특허·신기술 반영 여부가 건설업의 업무영역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특허·신기술 보유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 본연의 업역과 무관하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경우까지 종종 있어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여가 심각하게 배제되는 현실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11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 「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에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소재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에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06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제도 홍보 강화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부터는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인(원사업자)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발주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되었다.

종전 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지급보증 제공 등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발주자가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이 딱히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줄곧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들은 개정된 제도를 통해 공사대금과 관련한 많은 분쟁이 보다 형평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바 있다.

그러나, 민간 발주자들에게 동 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상당수 건설사업자들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며, 발주자의 불안정한 재무상태 또는 합리적 근거 없는 공사내용에 대한 불만과 하자 문제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12월 2일 수급인인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계약이행 보증을 하였는데도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해야하는 제도를 민간 발주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이행 보증문제와 대금지급 보증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구·군 건축 인·허가 부서에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추진하였다.

**제도개선**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10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만을 이유로 사업주 의견제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무분별한 산재신청, 보험금 지급,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사업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현행유지 또는 의견제출 기한(현행 10일)을 단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0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10월 7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인·허가기관의 장이 아닌 발주자의 사전 승인으로 일요일 건설공사의 시행이 가능토록 개선**
  -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공기준수 등을 위해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을 원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매번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원활한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증가됨.
  - 따라서, 민간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 발주자가 승인할 경우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수행 가능토록 개선을 건의함.

**03** **대업종 전문공사의 종합공사 발주 허용 관련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10월 13일 대업종 전문공사의 종합공사 발주 허용과 관련한 개선 의견을 국토교통부(중앙회 경유)에 제출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대업종 공사 전문공사 발주 원칙 고수**
  - 대업종공사에 해당되는 조정식재·시설물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공사로서 기존에도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시공함.
  - 그러나 정부에서 일부 대업종(조정식재·시설물, 지반조성·포장공사)에 대해 한시적('23년 말까지)으로 종합공사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대업종을 전문건설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대업종 공사는 전문공사로 발주토록 개선
- **주력분야 전문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참여 제한**
  - 정부는 전문 주력분야로 발주되는 공사에 상호시장 개방원칙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
  - 그러나 발주기관에서 전문 주력분야를 지정하여 발주하는 것은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 노하우 등을 고려한 것으로써 별도의 제한사유 없이 종합건설사업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개선

**04** **전문건설사업자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개선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건설공사는 제외)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노무비의 경우 **공제액(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을 포함하여 청구하면 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고 실 지급노임만으로 청구토록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보험료 및 세금 납부시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회원사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청구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노무비에 공제액(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이 함께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점검하여 공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토록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개선을 10월 13일,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조치(중앙회 경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05** **건설공사 발주시 특정자재 규격·모델·상표 지정 금지 등 협조 요청**

최근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공고서나 설계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자재의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 9. 6)에서 입찰 및 계약시 계약담당자가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발주기관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회원사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10월 25일,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시 투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특정 자재의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시공을 지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협조 요청했다.**

**0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11월 3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지보수공사의 정의 명확화**

- 현재 유지보수공사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보수공사 뿐만 아닌 별도 신설되는 전문공사 및 구조물 전면교체공사까지도 유지보수공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기존 시설물을 개량 보수·보강 하는 공사만 유지보수공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의 개선 필요

**· 주력분야 전문공사 건설사업자 참여 제한기준 형평성 확보**

- 발주기관에서 전문 주력분야를 지정하여 발주하는 것은 해당 주력 이외의 전문공사 참여를 제한하면서까지 주력분야의 시공기술, 노하우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 본 업역의 전문공사마저 발주자 재량으로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있는데,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직접시공이 의무화된 경우에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따라서 전문건설사업자뿐만 아닌 종합건설사업자도 입찰참여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07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11월 1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윤준병 의원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윤준병 의원안) 반대 의견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가 전체 건설공사로 확대 될 경우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가중 및 경영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 반대
  - 노무비 구분지급이 민간공사 등 전체 건설공사로 확대될 경우 건설사업자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가중
  - 노무비 등 원가공개로 인해 저가 원·하도급에 악용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노무비닷컴 등 기 도입·운영중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불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08 조경식재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완화(2년 → 1년) 건의**

부산시회는 12월 3일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중앙회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는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수를 비롯한 각종 수목식재공사는 타 건설공사와는 달리 생물을 식재하는 공사로서 준공 후 1년 동안 4계절의 기후변화를 모두 겪고도 수목이 고사하지 않았다면 시공상의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서는 1년이 지나 폭염, 가뭄, 동해 등 이상기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수목 고사까지도 하자로 보아 조경식재공사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하자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에 따른 공공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을 내세워 일방적인 재식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조경식재 공사 완료 후 1년 동안 4계절의 기후변화를 겪은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는 시공상의 책임이 아닌 이상기후 발생 또는 수목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12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의 주요내용**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는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준 신설 반대(제39조 제1항 제7호)
  - 계절·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항까지 사업주에게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주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공사중단에 따른 공기연장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의 명확한 대응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10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공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완화 추진**

기획재정부는 건설사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부실시공 예방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2019. 9. 17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설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 및 일차리찰출 실적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한 입찰제한 처분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서는 **건설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공고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들은 설계내역서 검토 결과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12월 7일,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공고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사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사비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및 산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낙찰자 결정전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중앙회 경우)했다.

11

**하도급계약시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 또는 하자이행보 증서 요구 금지 추진**

최근 일부 종합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회원사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 지정 등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시정명령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5호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고시」 Ⅱ. 3. 가. 에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 이행 또는 하자이행에 대한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은 부당특**

**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시정명령과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12월 7일, 00종합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행 또는 하자이행에 대한 특정 보증기관(서울보증 등)의 보증서를 요구하여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등의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추진했다.**

12

**코로나19 등 관련 지역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

코로나19 확산과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 등으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들은 건설공사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12월 10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문건설사업자 보호·육성을 위한 건의서를 부산교통공사(회계처)에 제출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의 주요내용**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공사 발주 협조
  -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주된 전문공사 구성 업종 및 구성비율만 기재
  - 단순한 전문공사인 경우 2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토록 제한
- 입찰공고문에 시공품질 향상 등 사유 기재
-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주된 전문공사가 전체 공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된 전문건설업으로 발주
-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관급자재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로 제한 발주
-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직접시공 여부 점검 강화
  -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 하여야 함.

## 2021년 4/4분기 신기술 현황

• 지정번호(지정일자)	920(2021.10.20)
• 개발업체	현대건설(주), 삼표피앤씨(주)

- » 신기술명                    단부 보강형 프리캐스트 더블 월(Precast Double Wall)을 이용한 복합화 공법
- » 주요 내용                    두 개의 얇은 PC 패널이 이격 공간(중공부)을 두고 서로 마주보도록 철물로 연결하고 부재 단부에서 두 PC 패널을 보강 연결 철물로 보강하는 PC 부재인 단부 보강형 PC 더블월 을 공장 제작하여 현장 조립을 마친 후 중공부에 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 구조체와 일체화 하는 복합화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21(2021.10.29)
• 개발업체	(주)바로건설기술, 에이앤유씨엠 건축사사무소(주), (주)반도건설

- » 신기술명                    1.5M 이상 기초(Mat)의 상부철근을 지지하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철근 받침구조체(높이 조절 바체어) 공법
- » 주요 내용                    기초의 상부철근받침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에 있어 버림콘크리트의 요철에도 높이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상부 철근의 하중을 균등히 바체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바체어 설치 시 용접작업을 생략할 수 있도록 결합장치를 갖춘 철근받침구조 공법(높이조절 바체어)이다. 첫째, 사각기둥형상의 코너에 수직 앵글을 배치하고 이를 수평재와 사재로 서로 연결하여 작은 부재의 조합으로 입체트러스를 구성하며, 둘째, 바체어 상부에 볼트와 너트를 배치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셋째, 너트 위에 받침부를 두고 받침부에 'ㄱ'형강을 마주 보게 용접하고 수평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받침용 'ㄷ'형강을 용접 없이 'ㄱ'형강에 고정할 수 있고, 바체어와 바체어를 서로 연결하는 수평연결재와 바체어의 수평하중저항을 위해 경사로 거치하는 가새는 전용클립을 이용하여 용접 없이 고정 및 거치할 수 있는 철근 받침 구조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22(2021.12.07)
• 개발업체	(주)세종이엔씨, (주)다우컨설턴트, (주)서헌기술단, 금호산업(주), 대전도시공사, 계룡건설산업(주)

- » 신기술명                    경량 패널을 이용한 수직굴착면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공법
- » 주요 내용                    원지반 굴착시 패널 높이만큼 수직으로 굴착하여 무게를 500kg 이하로 경량화 시킨 패널을 수직굴착면에 설치하고 패널과 원지반 사이의 틈새를 시멘트 몰탈로 충전하여 일체화시킨 원지반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23(2021.12.22)
• 개발업체	(주)서린브릿지텍, (주)효명이씨에스, (주)하영이앤씨, 극동엔지니어링(주), (주)케이씨아이

- » 신기술명                    압축플랜지 보강재를 대체하는 스테드 보강구조와 하부콘크리트의 수축변형을 수용하는 홈을 갖는 이중합성 강박스거더 교량의 설계 및 시공방법(DCB거더 공법)
- » 주요 내용                    지점부 강성을 향상시키고 형고 감소 및 경간장 증대를 추구할 수 있는 공법으로서, 지점부 압축플랜지는 기존의 복잡한 보강상세를 대체하는 스테드 보강구조를 가지며, 지점부 하부콘크리트는 건조수축 등에 의한 수축변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단지연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하부콘크리트 중앙부에 홈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하부콘크리트와 양 복부 사이의 틈새를 방지하여 결로수에 의한 강박스거더의 부식방지 및 자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앙부 홈이 형성된 이중합성 강박스거더 설계 및 시공방법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설인

## (주)청산산업 대표이사 강성구



사랑하자, 봉사하자,  
감사하자

만면에 미소가 어린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하지만 단지 겉모습일 뿐이다. 강성구 (63) (주)청산산업 대표. 그는 넘어지더라도 기필코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건설인이다.

그는 살면서 겪은 좌절과 실패의 순간을 자신을 더 발전시킬 계기로 삼았다. 자신을 가로 막는 엄청난 벽을 만났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어두워야 밝음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내려 가야 정상 of 기쁨을 갈구할 수 있으며 실패해야 성공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다. 맞아! 넘어질수록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강 대표는 잇단 좌절과 실패를 겪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넘어선 '오뎅이'다.

그는 고향이 밀양이지만 기억에 없다. 아주 어릴 적에 양산 배넛골로 왔기 때문이다. 당시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버스도 없어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는 양산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친 후 형과 누나가 살던 부산으로 향했다.

광안동에 있던 금속창호업체에 들어가 7년을 보낸 강 대표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사장이 그에게 인수 제의를 했던 것이다. “공장이라고 해봐야 나대지에 천막을 쳐놓고 절삭기와 산소용접기 등 공구만 갖고 일을 하던 시절이라 큰돈이 필요 없었어요.” 어린 사장이 된 그는 입대를 위해 형에게 회사를 맡겼다. 방위 근무를 마친 그는 형을 위해 회사에 돌아가지 않고, 다른 업체에 들어갔지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2년 만에 그만뒀다.

그리고 경민건설이란 회사를 다시 세웠다. 대문과 난간, 아파트문을 직접 만들다, 이후 제작 전문업체들이 생겨나자 제품을 납품받아 시공하면서 쏠쏠히 돈을 벌었다. 사업에 자신도 생겨 전문건설업 면허도 어렵사리 따냈다. 그런데 아빨싸,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경제를 강타한 거다. 부도를 맞았다. 모든 게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그는 배넛골로 들어가 3개월간 폐인 생활을 했다. 실망과 좌절, 그리고 자신을 막아선 거대한 벽을 바라보며 울분을 토해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마음에 새기며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 받을 것과 줄 것을 깨끗이 정리했다. 상당 부분은 벌어서 갚기로 합의했고, 거래처들은 자재를 계속 납품해주기로 양보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오로지 그의 정직성과 신뢰성 덕분이었다. 평소에도 ‘말이 밥’이라며 약속을 잘 지키기로 이름났던 그였기에 재기의 발판이 극적으로 마련됐던 거다. “직원들 임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줬고, 그게 안 되면 패물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마련했죠.”

강 대표는 청산산업에 이사로 재직하며 사업을 해나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그에게 재기의 기회가 찾아왔다. 1년 정도 지난 1998년 사장이 그에게 회사를 팔겠다고 제의했다. 지금이 모자라 또다시 “벌어서 갚겠다”며 읍소했고, 사장이 흔쾌히 이를 받아들여 청산산업은 강 대표의 회사가 됐다. “신용불량자여서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모두가 푹푹 멍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업에 온 힘을 쏟았어요.” 일을 맡으면 대충이라는 건 절대 없다. ‘내 집이었다면 어떻게 할까’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 그렇게 고객층의 신뢰를 쌓아가자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보내면서 회사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10년 만에 빚을 다 갚았죠. 거기다 두구동에 새 건물을 지어 들어오니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원청업체들의 ‘갑질’이 너무 심하자 그는 종합건설업체(청

산산업개발)를 설립하면서 방어선을 단단히 쳤다. 다시는 같은 실패를 맞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는 러시아에서의 공사 실패담을 들려줬다. “러시아 현지에서 일을 해주해 한국에서 시공업체를 구하는 사람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요.”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톡에서 주택에 온돌을 설치하고, 상가나 은행 등 건물 외벽에 복합판넬을 덧씌우는 일을 1년 반 가량 맡았다. 강 대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독일제 복합판넬 제품을 수입했고 첨단 장비도 갖추고 있었다. 사할린 현지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대형발전기까지 가져가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자신만만하게 일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다. 처음에는 제대로 공사비를 지급하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2억 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입은 채 눈물을 머금고 러시아에서 철수해야 했다. 그 사건은 강 대표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다. ‘오뎅이’ 기질로 단련된 그는 거친 풍파를 헤쳐 나갔고 오늘날 3개 회사를 거느린 알짜배기 건설인으로 성장했다.

‘실패하라, 그리고 배워라’는 말이 있다. 성공을 값지게 만드는 것은 실패를 통해 깨달은 교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강 대표는 쓰러질 때마다 강한 반탄력으로 일어섰다.

그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많이 벌었고, 또한 많이 잃었다’는 말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요약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주변에서 준 도움을 강 대표는 결코 잊지 못한다. 그가 사훈을 ‘사랑하자, 봉사하자, 감사하자’로 정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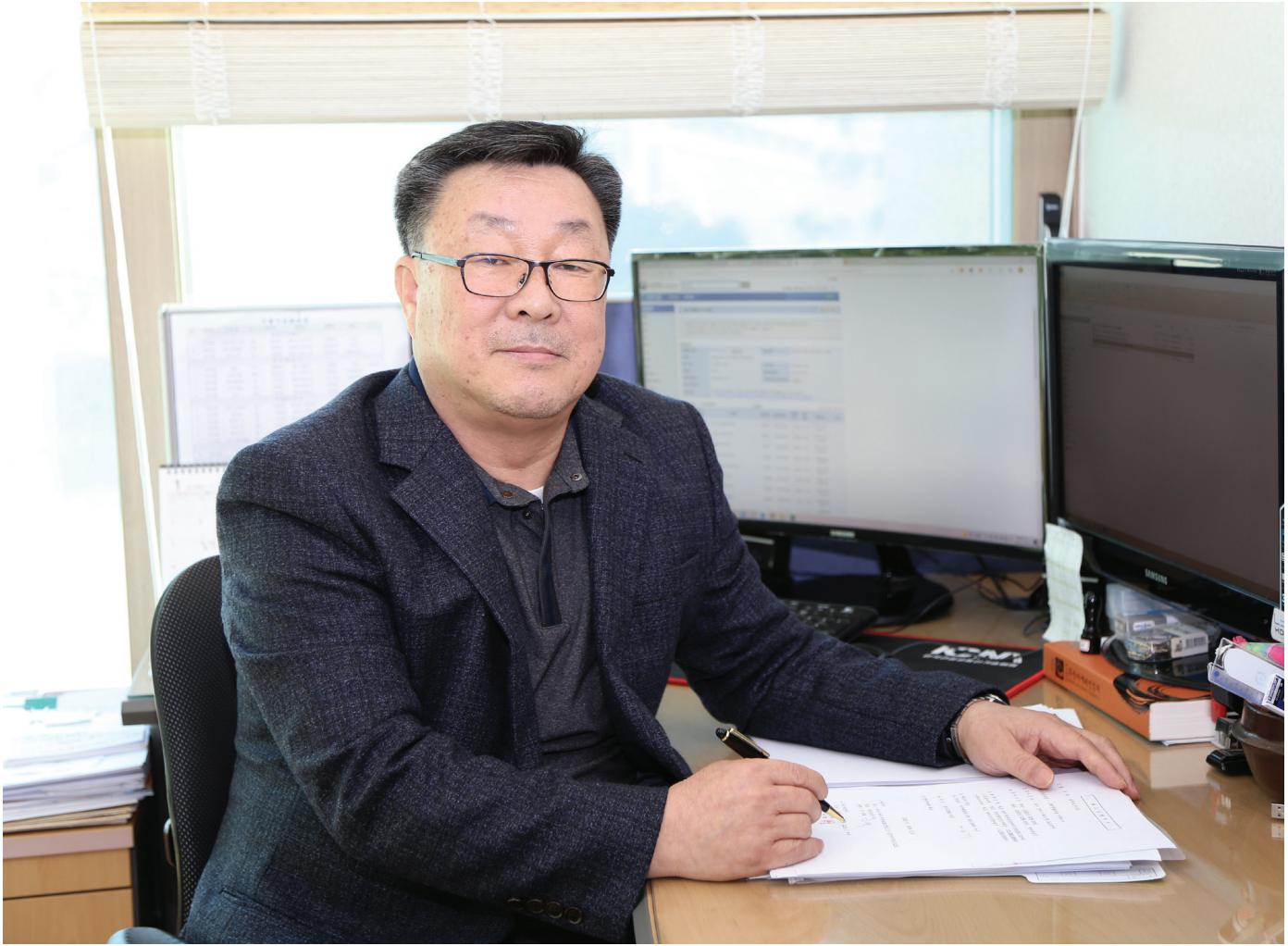
글 최원열





끊임없는 성찰로 부지런히 달려온 건삶인

## (주)천진 대표이사 **심재복**



### 후덕재복(厚德載福)

덕이 있으면 복이 있다

무인불승(無忍不勝)이라 했다. 참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법. 심재복(60) (주)천진 대표는 갖은 고통을 견뎌내고 오늘에 이른 불굴의 건삶인이다.

그는 동구 초량동에서 태어난 부산 토박이다. 20대 중반까지 어느 젊은이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지냈다. 그런데 엄청난 '쓰나미'가 그를 연이어 덮쳤다. 당시 전국적으로 민주화 항쟁이 한창이던 때 젊은 혈기로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게 화근이 되었던 거다.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일단 피신하기로 했다. 심 대표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 태백 인근 탄광. 1년가량 일하면서 참 힘든 생활을 했다. 일하던 막장이 갑자기 무너져 4시간 만에 겨우 구조되기도 했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던 일본일초가 그에겐 삶이 꺼져가는 바람 앞 촛불이었을 테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부산에 내려왔더니, 여전히 경찰의 수배가 풀리지 않았더라. 그래서 다시 고행의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이번엔 망망대해를 택했다. 참치잡이 원양어선에 오른 그는 남태평양의 서사모아와 타히티 등을 떠돌아다니며 본의 아니게 해외여행을 실컷 해야 했다. 집채만한 파도와 싸우며 참치와 사투를 벌이기를 무려 3년 반. 그제서야 안심하고 귀향한 그였다.

심 대표는 1990년 지인이 운영하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에 취업했다. 그게 건설인으로서의 첫 걸음이었다. 총무과에서만 14년이란 긴 시간을 보내며 잔뼈가 굵었다. “중소 건설업체에서 총무라면 팔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력관리는 물론이고 노무와 공무를 총괄해야 했죠. 심지어 운전기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때 알고 지냈던 총무 출신들이 지금은 그의 주변에 단 한 명만 남았다. 대부분 자립해서 사업을 하다 실패의 쓴맛을 보고 업계를 떠났다는 거다. 그리고 보니 그 힘든 세계와 싸워 이긴 심 대표가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오래 알고 지내는 원로 사장님들은 지금도 저를 심 총무라고 부르죠, 하하.”

심 대표는 2003년 드디어 홀로서기에 나섰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가혹하기만 했다. 1t 트럭에 공구와 자재, 그리고 인부들을 싣고 현장을 돌아다니기를 7년 이상 해야 했다. 그를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는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공사를 했지만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올진의 빌라를 대물로 받기도 했다. 그나마 그에게 훌륭한 별장 역할을 한다니 다행이다.

2014년 드디어 태영토건(주)을 설립한 그는 운영을 부인(진성희 대표)에게 맡긴 채, 품앗이 공사를 계속해 나갔다. “와이프가 일에 엄청난 열정을 지니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토목 관련 자격증을 따내 어엿한 기술자로 인정받고 있는 능력자거든요.” 부부는 그렇게 ‘건설 맞벌이’를 하고 있다. 남들이 1을 할 때, 2를 해내니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2년 후 그는 지금의 천진을 인수했다. 태영토건이 있기에 직원을 따로 채용할 필요도 없었다. 참을성 있게 밀어붙이는 심 대표의 뚝심은 역시 대단했다. 저조했던 실적이 2년 전에는 20억 원을 기록했고,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들기만 했던 지난해에도 당당히 15억 원을 수주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어찌 사업에 오르막만 있을까. 성공이란 항상 쥐어짜는 고통을 견뎌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이 아니던가. 그 힘든 여정을 생각하면 심 대표는 지금도 아찔하다.

5년 전 동래 내성교차로에서 1800mm짜리 대형상수관이 터졌을 때, 통수밸브까지 고장나는 바람에 꼬박 사흘을 현장에 머물러야 했다.

지난해엔 공사 도중 굴착기가 22만볼트 짜리 고압전선을 잘못 건드려 터지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한국전력에 무려 1억5천만 원을 변상해야 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가 ‘전과 10범(?)’. 말인즉슨 긴급공사를 자주 하다 보면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가 감수해야 했던 게 ‘교통방해죄’와 벌금.

“2020년 말 부산시로부터 ‘차량스러운 건설인상’ 수상자로 선정돼 공적조서를 준비하던 중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긴급공사의 정당성은 어디 가고 죄만 받다니,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다. 밤샘하며 일한 ‘죄’로 얻은 ‘훈장’이라고 말이다.

심 대표의 말대로 상하수도설비업은 정말 힘든 일이다. 일이 터지면 밤낮없이 뛰어나가야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 있어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도 도시기반시설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묵묵히 일한다. 그 애환을 알아줄 날이 오기는 할까.

심 대표에게 마음에 새기는 좌우명을 문자 사무실에 걸린 액자를 가리킨다. ‘후덕재복(厚德載福)’이 씌어있다. ‘덕이 있으면 복이 있다’는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다. 절묘하게도 그의 이름이 들어 있다. 온갖 역경을 견뎌낸 인내가 그에게는 덕이라는 생각이 든다. 견뎌낸 인생이란 나무의 강도를 나타내는 인내의 나이테라고 했다.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견뎌의 힘을 통해 미래를 환히 밝힐 수 있음을 심 대표를 통해 보고 있다면 지나친 걸까. 그는 지금도 당당히 외친다. “그 까짓 고생이 뭐시라꼬!”

글 최원열





# 01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개정 안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융·복합건설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와 관련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 및 품목, 신청절차, 관리 및 감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2021.9.16)】

#### 01 주요내용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등 관련 정의조항 신설(제2조 개정)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제73~75조)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 및 품목의 구체화,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심사·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제76~79조)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장비의 설치 및 관리방법, 지원의 취소 및 제한사유 등 보조·지원 운영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80~85조)
-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일부 자구수정
  - 한국시설안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02 시행일 : 2021. 9. 17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02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고시 안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1. 3. 16)으로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하였다.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2021.9.8)】

#### 01 주요내용

-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정의를 명확화(제2조)
- 적정 공사기간 산정 절차 규정(제6조 내지 제12조)
-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및 계약변경 등 규정(제16조 내지 제8조)
- 발주청 세부운영기준 마련(제19조)

#### 02 시행일 : 2021. 9. 17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공포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2021.10.5)]

**01 주요내용**

- 직업성 질병의 범위(제2조)
  - 급성 질병으로 인과 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가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한정\*  
(※ 근골격계 질환 제외)
  - \* 일산화탄소, 납, 수은, 벤젠, 카드뮴 등으로 인한 급성 중독, 독성간염, 무형성 빈혈, 산소결핍증, 열사병(심부체온상승 동반)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의무(제4조)
-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무(제5조)
-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제6조, 제7조)
  - 교육시간 :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
  - 교육시기 :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 확정  
(교육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 과태료 : 1차(1,000만 원), 2차(3,000만 원), 3차 이상(5,000만 원)

**02 시행일 : 2022. 1. 27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개정 근로기준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시행 안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과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의 교육이수의 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근로기준법령 주요내용 [법률 제18037호(2021.4.13)]**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116조 제1항)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치(법 제76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별표7)

**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법률 제18037호(2021.4.13)]**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법 제32조 제1항 제2의2호, 시행령 별표)
- 사용자 교육 내용·방법·시간 등(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제공
  - 내용 : 노동관계 법령, 인권, 산재예방, 보험제도, 행정 신고사항 등
  - 방법 :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 교육시간 : 6시간

**03 시행일 : 2021. 10. 14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0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주요개정 안내

2021년 이후 개정된 하도급분야 법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확대
- 중소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동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의무 신설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요청가능
-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중견 기업 전체로 확대
- 피해구제시 벌점 경감 등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 관점에서 벌점제도 개선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체화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에 명문화
-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서면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 명확화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6

## 도로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안내

국토교통부가 도로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용어 58개를 쉬운 용어로 표준화하여 제정·고시하였다.

- 01 **고시명** : 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38호(2021.10.8)】
- 02 **표준화 예시** : 싱크홀 ⇒ 땅꺼짐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7

## 개정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시행 안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사회는 다음과 같이 회원사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2021.5.18)]

**01 주요내용**

- 근로자 임금 지급 시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제48조 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 \*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규정에 따라 임금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제43조 제1항 단서)
  -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17조 제2항 제2호)

**02 시행일** : 2021. 11. 19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8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항목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30호(2021.11.19)]

**01 주요내용**

- 임금명세서 기재항목 규정(시행령 제27조의2)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근로자에 임금지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토록함에 따라 세부 기재항목 규정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시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시 그 시간 포함)
6. 임금 일부 공제시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무료 보급

-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시행령 별표7)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근로자 1명당 기준) 1차(30만 원), 2차(50만 원), 3차(100만 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	과태료 부과(근로자 1명당 기준) 1차(30만 원), 2차(50만 원), 3차(100만 원)

**02 시행일 : 2021. 11. 19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09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공포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발주 시 적용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1호(2021.11.12.)]

**01 주요내용**

-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유형(신설 또는 유지보수) 구분 및 입찰공고문 기재
-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전문공사 발주 시 발주자 재량으로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내용에 대한 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
- 별표2 내 별첨1 점검표 수정 연번 13, 14(납입자본금 점검사항 삭제)
- 별표2 내 별첨2 자본금 점검 순서도 삭제

02 시행일 : 2022.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10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2021.11.12)]

01 주요내용

- 종전 전문건설 시공업종이 주력분야로 변경된 사항 반영
-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인정받은 실적은 시공능력 평가실적으로 인정받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 업종전환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상호진출 실적인정 근거 마련

02 시행일 : 2022.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11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36호(2021.11.19)]

01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전담 조문 신설에 따른 위임 조문 개정(제12조, 제13조)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 법률 상항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3년→5년) 상항(제237조)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내용 개선(별표1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내용 중 건설물, 기계설비 등의 배치 도면은 방지계획서 세부 내용에 포함되어 불필요하므로 삭제

02 시행일 : 2021. 11. 19 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37호(2021.11.19)]

**01 주요내용**

-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제45조)
  -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등 설치,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등
-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제63조)
  - 달비계 종류(곤돌라형, 작업의자형)별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의무를 명시
- 굴착면 기울기 기준(연암 0.5→1.0, 경암 0.3→0.5) 개선(별표11)
  - 경암과 연암의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건축법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연암 0.5→1.0, 경암 0.3→0.5)

**02 시행일 : 2021. 11. 19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551호(2021.12.7)]

**01 주요내용**

-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 4항)

**02 시행일 : 2021. 12. 7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 강화, 기업부담 완화 및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에 따라 입·낙찰제도 반영을 위해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주요내용**

-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안전관리 강화
  - 사고사망만인율(신인도 평가항목) 평가를 가점 → 가·감점으로 전환
-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 간이형 종합심사 평가 결과 동점자발생시 처리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 →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
    - ※ 우리협회 건의·추진사항으로 낙찰을 상향 기대
-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사유 명확화(공사계약 일반조건)
  - 발주기관이 계약해지 가능한 사유에 대한 구체화
    - ※ 정부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과도한 지역민원제기, 기타 공공복리 등에 의한 사업변경 등

- **10억 원 미만 공사의 업체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적격심사 기준)**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도 업체가 재무비율, 신용등급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 \* 기존의 경우 재무비율 평가만 가능
- **전문건설업 대입종화 시행 관련 심사제도 정비(중심제, PQ, 적격심사)**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된 전문공사의 경우 (주력)업무분야에 대한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공사원가 계산시 작업설·부산물 등 재료비 공제 관련 개선(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 등은 재료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 ※ 우리협회 건의·추진사항으로 공사비 증가 기대

**02 개정·시행일 :** 2021. 12. 1 부터(다만,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행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32호(2021.11.19)】

#### 01 주요내용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중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 상황 명시 (제53조의2 신설)**

1.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제55조의2 신설)**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 기준(제109조의2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환수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별표 35 제4호바목 신설)**
  -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02 시행일 : 2021. 11. 19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15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337호(2021.12.15)】

01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안 제2장 1.나)
-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안 제2장 3.자)
-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안 제5장)
-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안 제6장 5)
-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안 제8장 6.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안 제9장 별지 5)

02 시행일 : 2022. 1. 1 부터(다만, 제2장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기숙사 시각자료(사진, 영상 등)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주요내용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기숙사 정보
  - 주거시설 전경
  -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 화장실, 세면·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 냉·난방시설
  - 채광 및 환기시설
  - 소방시설
  - 수납공간

02 시행일 : 2021. 12. 16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17

##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1. 12. 31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금지급 기한 단축 등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2. 6. 30 까지 재연장토록 고시하였기에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주요내용

- 수의계약 대상 확대
  - 전문공사 1억 원 ⇒ 2억 원 미만 / - 종합공사 2억 원 ⇒ 4억 원 미만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도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 계약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 대금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02 시행일 : 2022. 1. 1 부터

### 03 한시적 특례기준 적용기한 : 2022. 6. 30 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8

##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1. 12. 31 까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금지급 기한 단축 등에 대해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2. 6. 30 까지 재연장토록 고시하였기에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주요내용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 계약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 대금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02 시행일 : 2022. 1. 1 부터

### 03 한시적 특례기준 적용기한 : 2022. 6. 30 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1

## 표준시방서 관련 자문 청구 개설 안내

표준시방서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관계기관인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협의하여 우리협회 중앙회 홈페이지에 마련하였으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활용하면 된다.

- 우리협회 중앙회 홈페이지(www.kosca.or.kr)

The screenshot shows the KOSCA website interface with a navigation bar and several content blocks. A red box highlights the link for '표준시방서 자문청구 국가건설기준센터' (Standard Specification Inquiry National Construction Standards Center) in the bottom navigation area.

# 02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하여 경력·자격 등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는 기능등급제를 도입·운영(2021. 5. 27)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회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오픈한 「건설기능플러스 시스템」(www.cw.or.kr/plus)에서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하여 이용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발급절차

- 모바일 또는 PC
  - ① 건설기능플러스(www.cw.or.kr/plus)접속
  - ② 최초교육 이수
  - ③ 증명서 발급

※ 기능등급증명서 최초 발급신청 시 최초교육 필수
- 방문
  - ①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② 최초교육 이수
  - ③ 증명서 발급

### 02 문의처

- 본회 기능등급관리팀 : 02-519-2102 ~ 5
- 부산지사 : 051-462-5711



## 03

###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보조지원 사업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규 개발된 채광창 안전덮개(일정 무게와 충격을 견디되,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매입자석에 의해 지붕에 탈부착하는 안전덮개)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지원대상**: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지붕공사실적(신청일 기준)이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건설업 본사  
※ 종합·전문 구분 없음
- 02 **지원조건**: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 원(공단 판매금액의 70% 지원)
- 03 **지원품목**: 알루미늄 합금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성능 및 제작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 0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인터넷 환경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05 **클린사업장 지원 홈페이지**: <https://clean.kosha.or.kr>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4

### 공정거래위원회 21년도 3분기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안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한 사업자 등의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2021년 3/4분기 달라진 공정거래제도를 반영한 자료를 홍보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동 교육자료를 10월 20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술자료 요건(비밀관리성) 완화(안 제2조 제15항)**
    -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안 제12조의3 제3항)**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안 제35조의2 ~ 제35조의5)**
    -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
- 02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 **중견·중소기업의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한 대기업에 점수 부여**
    - 대기업이 1-2차사 및 2-3차사 간 협약체결을 넘어 협약평가신청까지 독려한 경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 상향**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을 상향
  -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유도**
    -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또는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비용 지원 등 대기업이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 가점부여

- **금형 거래계약서 사용 활성화**
  - 공정위가 보급한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준수하여 금형 거래계약서를 마련·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탄소중립 추진 활동'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
  -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에 기여한 활동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
- **어음 교부일 단축 유도를 통한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화**
  - 코로나19 등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 지급시 그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점수를 단계적으로 감점
- **법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 거래상지위 남용 이외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5

### 지방세 납부 유의사항 안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지방세 납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오납분에 대한 정정·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건설공사대장 관련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억여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되찾아 오거나 새로 추징한 바 있어 회원사의 지방세 미납·오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부산사회는 10월 25일, 회원사에서 건설공사 수행시 키스콘에 등록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정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각종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환수·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01 「지방소득세」이란?

-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로 개인은 소득세 과세표준의 0.6% ~ 4.5%, 법인은 1% ~ 2.5%를 매년 4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함.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85조부터 제103조의64까지

#### 02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매월 직원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
- 면세대상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장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7까지

#### 03 기타사항

- 각종 지방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 관할 구(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06

## 부산시설공단 「연구개발 현장실증 플랫폼」 운영 안내

부산시설공단에서는 2020. 4. 1일부터 공공 인프라(공단 관리·운영시설)를 활용한 현장실증(Test Bed)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제안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첨단 기술의 현장실증이 필요한 회원사에서는 동 제안창구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 01 **운영목적**: 첨단기술, 혁신기술의 공공 인프라 활용 현장실증 사업 지원
- 02 **운영기관**: 부산시설공단(상시 운영)
- 03 **지원내용**: 공단관리 도시기반시설(7개 분야 28개 사업) 현장실증
- 04 **활용방법**: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www.bisco.or.kr) 내 「연구개발(R&D) 제안창구」에 제안서 제출
- 05 **문의사항**: 시민안전실 기술혁신팀(차기혁 차장, ☎051-860-7931)

# 07

## 건설부조리 및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고충해결을 위해 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불법도급 행위 등 건설부조리 행위와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로부터 겪고 있는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에서는 상시적으로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 활용할 것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신고하는 곳**: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FAX : 051-633-0261)
- **신고기간**: 상시 접수
- **신고방법**
  - 방문신고 : 부산시회 사무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전문건설회관 4층)
  - FAX 신고 : 부산시회 사무처(FAX : 051-633-0261)
- **신고대상 및 유형**

### <건설부조리행위 신고 유형>

- 전문공사를 건설업 무등록자가 도급(하도급 포함) 및 시공하는 행위
- 건설업등록 업종과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행위
- 건설업체가 직영시공으로 위장하여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시공하게 하는 행위
- 건설업체 이사로 등재한 후 소속 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행위
- 기타 건설부조리행위 등

###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유형>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 추가공사 지시 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반영하여 주지 않는 행위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 유형을 설정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주지 않는 행위 등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 행위

- **신고서식**: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불법·불공정행위 신고」에 게재



08

**「시설공사 견적공유시스템」  
개설 안내**

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의 설계관리 및 내역검토 시 시설업무 담당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이 견적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공사 견적공유시스템」을 마련하여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 공개 시 유사사업을 추진 중인 발주기관, 설계사가 참고·활용할 수 있어 업체 홍보 효과가 기대되므로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9

**공공입찰 관련 건설업등록  
기준(기술능력) 점검 강화  
안내**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이 적발되어 행정처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10월 25일 건설기술인 경력증·자격증 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의 위법 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01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위반 사례**

● **기술능력 부족**

-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보유로 해당 업종의 기술자 제외 후 건설업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부족한 경우
  - ※ 안전진단전문기관, 엔지니어링사업자, 석면해체·제거업, 소방시설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나무병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보유 시 건축·토목 등 분야의 기술인력 필요
-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착오하여 운영
  -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는 2010.2.10 이후 건설업 신규(추가) 등록 시 적용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만 적용)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 **국가기술경력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 낮은 급여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 기술자와 사업장 소재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주거상황이 불명확
- 기술자 담당업무 불명확, 근무일지, 기타 보고서 등 근무자료 확인 불가
- 자격취득종목 또는 건설기술 등급이 높으나 급여가 현저하게 적음
- 유선 확인에서 상당 부분 답변 못하거나 답변 거부, 연락 두절 등
  - ※ 기술자의 급여통장 회사 보관, 급여 현금수령 확인서 제출(회사에서 급여를 인출한 내역 없음), 비현실적 급여 지급 등

(적발)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② 고발 및 기술자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상시 근무 미준수**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가 개인사업 영위
  - ※ 굴삭기운전기능사 등 중장비운전기능사의 건설기계임대업 영위
  - ※ 등록 또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
  - ※ 정보통신공사업, 소매업, 주택건축판매업 등 개인사업
- 다른 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겸직
- 공사나 일이 있을 때만 건설공사 현장 또는 사무실 근무(공사나 일이 없을 때는 근무 상황 파악 불가)
- 파트타임(시간당 급여지급, 주 20시간 근무 등), 일용직 근무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02 기술능력 미달 여부 적발 및 조사 방법(지방자치단체)**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 기술자자격증 사본, 보험 가입증명 등을 상호대조·확인 하고, 필요시 건설기술자 개인별 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 확인
  - 급여지급(통장 또는 온라인 계좌입금내역 전산출력물) 내역 자료 확인
  - 급여 현금지급시 회사 통장(급여 출금내역) 및 기술자의 통장 내역 확인
  - 기술자의 주소지 확인 결과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출·퇴근 내역 확인
  -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 자료요청을 통해 추가자료 확인
- 「국가기술자격 대여 단속 업무 매뉴얼(2019.1 고용노동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의심 기술능력 조사
- 개인사업 등 기술자가 상시 근무를 미준수한 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징구하여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상태 확인
  - 사업자등록 확인 시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원 등 개인사업 영위 확인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조경석 사용 시 석면함유 여부 조사 안내**

최근 인천 소재 아파트의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해당 건설사에서 석면 검출 조경석을 모두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사회는 조경석 시공 시 석면 함유 여부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석면 함유 조경석 시공으로 인한 회수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01 관련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 등의 사용금지 등)
  - 누구든지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석면 함유 조경석 포함)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됨.
-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02 건설사(조경업체) 조치사항**

- 조경석 시공(납품) 시 전문기관에 의한 조경석 석면 조사 필요
  - 함유 가능 지역의 조경석 시공(납품) 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조사 (육안감별/필요시 전수조사 및 분석) 필요
- 조경석 관련 전문 조사기관
  -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egis.me.go.kr>)의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이용, 석면산출가능성을 확인 후 의뢰 절차 진행
  - 정확한 석면 판별을 위해 지질학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나 환경부 지정 석면환경센터에 의뢰, 석면의 함유 여부 확인 추천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1

**지붕공사 중 산재  
사망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 철저 요청**

고용노동부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매월 4명 이상이 지붕 관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3대 안전조치)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이와 관련하여, 지붕작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에 따라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주요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2

**건설현장 요소수 수급  
불안정 관련 회원사  
대응방안 안내**

최근 건설현장은 국내 요소수 유통량의 급감으로 SCR(질소산화물저감장치)형 디젤엔진이 장착된 건설기계의 가동 차질 및 계약불이행과 이에 따른 회원사의 경영애로 및 공기준수 곤란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 중앙회는 정부, 종합건설업계, 공공발주자 등에 유통시장 감시 강화, 공기조정, 계약금액의 조정 등 적극적인 역할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부산사회는 회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만한 계약이행을 위한 대응방안 및 관련 법령·제도를 안내했다.

- 회원사 대응방안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한 대처 필요)
  - 기계임대업체와 협업하여 건설기계 가동상황, 미래 가동여부 등 점검
  - 발주자·원도급자와 실정보고, 애로사항 전달 등 적극 소통하면서 공정유연화\*를 적극 추진하여 원활한 원·하도급 계약 이행 도모
    - \* 건설기계 미활용 작업 선시공, 동절기 임박을 감안한 공기조정 등
  - 표준하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 기계이행보증 등을 점검하여 기계임대업체의 계약이행 불가 시 손실최소화 대비
  - 향후 원·하도급 계약기간, 대금의 조정 신청에 대비하여 불가항력적 상황, 피해규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축적 등
  - 발주자·원사업자가 지급하는 자재·장비의 운송차질·가동불가의 경우에도 명확한 실정보고 및 자료축적을 통해 공기연장, 대금 조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3

국무조정실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 할 수 있는 규제혁신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안내

### 01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안내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또는 이메일(sinmungo@korea.kr)
  - 우편 접수 : 세종특별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정비과
- **답변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답변
- **처리결과**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처리단계별 안내 문자전송

### 02 문의사항 : 규제정비과(☎044-400-2634)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2021년도 관내(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어, 부산사회는 회원사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노무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 협조사항 안내

### 01 업종별 주요 위반 사항

- **건설업**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9%)
    - 근로계약서 미작성(29%)
  - **제조업**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2%)
    - 임금체불(22%)
    - 취업규칙(변경) 미신고(22%)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41%)
    - 근로계약서 미작성(17%)
    - 취업규칙(변경) 미신고(14%)
  -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
    - 취업규칙(변경) 미신고(22%)
    - 근로계약서 미작성(16%)
-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성희롱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 작성·신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02 유의사항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교육일시에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주의
-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변경 작성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
- 건설업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시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건설공제부금 미납시 과태료 대상임을 유의.

03 문의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최은미 근로감독관 ☎051-559-6657

1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작성 이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발생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2008년 2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공사대금 지명채권양도\*로 규정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만 압류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선고 2007다54108)을 함으로써, 발주자들은 이를 근거로 확정일자가 명시된 증서가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회는 11월 22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하고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법무부에서 인가한 공증기관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공사대금 압류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우선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16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관련 안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의 제정·발령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업종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어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주요문의에 대한 답변사항

- 업종전환을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전환한 업종을 모두 보유할 수 있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전환업종의 건설업등록증이 각각 발급되어 2개의 업종을 한시적으로 보유하게 됨
-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은 업종전환 후에도 여전히 존재  
※ 예시(건축분야 실적 50억인 전업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건축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구분	업종전환전	업종전환 후 (23년까지)
건설업 등록증	1개 (시설물유지관리업)	2개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축공사업)
실적	50억 (시설물유지관리업, 50)	125억 (시설물유지관리업 50, 건축공사업 75)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7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배포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배포했다.

### •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의미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 상시 근로자 기준 및 법적용 시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 예산의 편성 기준 등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8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 365 채널」 적극 활용 안내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건설안전 365' 채널\*을 올해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 카카오톡 앱 실행 ⇒ 건설안전365 입력 ⇒ 채널 추가

해당 채널에서는 주요 사고의 경위, 재발방지대책 등을 3D 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부산시회는 회원사에 안내했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내 '건설안전 라이브러리\*'에서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작업 별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면 된다.

\* 홈페이지([www.csi.go.kr](http://www.csi.go.kr)) ⇒ 알려드립니다 ⇒ 건설안전 라이브러리



## 19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안내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TF 운영 및 현장감독과 관련하여 제보창구를 일원화하고, 신고사항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 설치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기간 : 2021. 11. 24(수)부터
- 신고내용 : 건설근로자 채용 또는 건설기계 임대계약 관련 청탁·강요·압력 및 공사방해 등 불공정 행위  
※ 신고자 신원 철저히 익명 보장
- 신고방법 : (전화) 044-2014-112, (이메일) con112@korea.kr

02 세부내용 :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20

## 2022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01 운영기간 : 2021. 12. 6 ~ 2022. 1. 28

### 0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T : 051-460-1042, F : 051-460-1004)

### 03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 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21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관련 리플릿」 안내

사업주의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교부방법 관련 리플릿을 제작하였에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임금명세서 관련 리플릿」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22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 사업 안내

부산상공회의소는 청년실업 및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어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사업기간** : 2021. 12. 1(수) ~ (사업종료시 별도 공지)
- 02 **지원내용**
  - 회원사 및 지역기업 구인공고 홍보지원
  - 구직자 알선·채용 연계
  - 일자리사업 컨설팅 등
- 03 **참여대상**
  - 구직자 : 미취업자 및 퇴직자 중 부산기업 취업희망자  
※ 기술교육훈련 수료생 및 경력자 우선 알선·채용 연계
  - 지역기업 :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구인계획이 있는 부산 소재 기업
- 04 **신청방법** :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 홈페이지(<http://job.bcci.or.kr>)
  - (구인기업) 구인의뢰요청 및 작성
  - (구직자) 구직신청 및 이력등록(우측 하단 배너 클릭)
- 05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 Tel : 051-990-7084
  - Fax : 051-990-7185
  - E-mail : ahn0414@korcham.net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23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교육생 취업지원 협조 안내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는 금년 3월 입학한 학생들이 교육 수료 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을 취득함에 따라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요청이 있어 부산사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사회 초년생으로써 첫 발을 내딛는 교육생들이 건설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우수한 기능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01 **취업 가능 시기** : 2021년 12월 말부터
- 02 **기능종목 및 배출인원**

직종	건축정보설계 (BIM)	실내건축시공	측량	특수용접	배관용접
총 210명(20명)	61명(17명)	26명(2명)	30명(1명)	32명	61명
기능사 취득종목	실내건축 건축CAD 건축도장 그래픽자격 지도제작CAD 토목CAD 조경	실내건축 건축CAD 건축도장 건축목공 거푸집 가구제작 방수	측량 콘크리트 지적 드론측량	특수용접 용접 에너지관리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공조냉동 배관 가스 특수용접 용접

※ ( )는 여학생임.

**03 구인의뢰 방법**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홈페이지(www.kscfcac.co.kr) 우측 상단 전문인력양성과정 바로가기 클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2022년도 채용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팩스(043-879-2336)로 제출

**04 문의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043-879-2334)**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4

**건설현장 사고(재해) 발생시 유의사항 안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2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시 신고제도'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재해발생 보고'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부산사회는 12월 3일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동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0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제도**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91조 제3항 제16호
- 건설사고란?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건설공사 참여자가 2시간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
-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0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발생 보고**

-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제175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 미제출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 중대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5

## 건설원자재 수급불균형·가격 급등 관련 대응방안 안내

금년 초부터 이어진 국내 건설현장의 원자재 수급 불균형 및 가격 급등 현상으로 공사대금 부족, 공기준수 곤란 등 하도급 회원사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관계부처·발주기관·종합건설업계에 회원사 고충 절감을 위한 협조 요청을 지속 실시중이며, 최근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21.11.18)시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위, 원·하도급 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부산시회는 물가인상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회원사 대응방안 및 현행 제도 현황을 안내하며, 회원사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01 회원사(하수급인) 활용 가능한 제도

-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원도급공사가 공공발주 공사이거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경우 활용성 배가
-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상기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적극 활용 필요

### 02 세부 대응방향

- ① 특정 자재의 수급부족, 가격급등에 따른 대금증액, 공기연장의 필요성 및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꾸준히 확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원도급사에게 공유(가급적 문서화)
- ② 원도급사(필요 시 발주자)가 원도급계약의 대금 증액, 공기조정을 발주자에게 요구하도록 조치하고, 원도급 대금 증액 시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을 정당하게 요구
- ③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추진
- ④ 원도급사가 ② 또는 ③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하도급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공적 조력을 요청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26

##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규제제도와 집행사례」 안내

협력업체 지원 또는 발주기관 업무 협조라는 선의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제도의 인지도 부족으로 처벌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회원사에 안내하며 입찰담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01 '입찰담합 규제제도와 집행사례' 주요내용

- |                 |               |
|-----------------|---------------|
| • 입찰담합의 폐해      | • 입찰담합 금지규정   |
| • 입찰담합의 유형      | • 합의의 의의      |
| • 입찰담합 제재조치     | • 자진신고 감면제도   |
| • MAS 2단계 경쟁 입찰 | • 입찰담합 주요 심결례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27

**(재)한국건설산업품질  
연구원 홍보 리플릿 안내**

(재)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은 협회에서 회원사의 기술지원을 위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바, 회원사의 경우 품질시험 수수료를 30% 감면 시행하고 있다.

동 연구원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토목 및 건축재료의 품질시험·검사업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수행 중인 KOLAS시험 업무, 전문기관의 객관적 성능평가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신뢰를 확보하는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회원사에서는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 홍보 리플릿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28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 안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건설기계지부\*에서는 건설기계를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임대료로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왔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부산사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현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부산건설기계지부 : 부산광역시, 김해, 양산지역 건설현장의 덤프, 굴삭기, 유압크레인, 레미콘, 콘크리트펌프카, 지게차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조직

## 29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 사무실 입지규제  
위반 관련 안내**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한 건설업체가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 마목에서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라고 규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제한을 가하는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사업자의 사무실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대상시설 및 지원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의 활용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여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건설업체를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유권해석하였으며,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사무실을 활용한 건설업 등록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현재 각 부처의 의견이 상이하고 최종적인 판단 또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내에 사무실이 위치하였거나, 입주할 예정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부산사회는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내 위치한 사무실이 건설사업자의 사무실로 조속히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30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안내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2021.10.14. 선고 2021다227100)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기에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근로관계가 1년간 유지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 (종전) 26일 → (변경) 11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0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관계가 1년간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 1년의 근로를 마친 날(365일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 15일의 연차 미발생 및 연차수당 청구 불가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 15일의 연차 발생 및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청구 가능
- 계약직(1년) 근로자
  - (기존) 26일(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 11일 + 1년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 15일)
  - (변경) 11일(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 11일)
    - ※ 1년 개근하였다더라도 365일째 근로관계 종료로 연차 15일 미발생
- 정규직 근로자
  - (기존) 1년 근로하고 365일째 퇴직 시에도 15일의 연차 발생
  - (변경) 1년 근로하고 365일째 퇴직 시 15일의 연차 미발생\*하는 반면,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 시 15일의 연차 발생
    -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되는 가산 연차도 마찬가지로 미발생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31

## 고용노동부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배포 안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앞서 건설업 본사 및 현장에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를 위해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기에 부산시회는 회원사가 현장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 자율점검표 주요내용

구분	주요 점검항목
건설현장 일반관리	● 청소, 조도관리, 통로 및 비상구 확보, 보호구 점검 등
사고유형별	● 떨어짐 예방 위한 보호구 착용, 추락방지설비, 비계 확인·점검 ● 맞음 예방 위한 중량물·슬링·후크, 낙하물 방지망 점검 ● 붕괴 예방 위한 굴착사면, 흙막이가시설, 거푸집동바리점검 등
건설기계·장비별	● 건설기계·장비 운용 시 운전자 자격 확인 및 주된 용도로만 사용 ●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장비별 핵심 확인·점검사항 등
위험작업별	● 위험작업임을 알리는 경고, 알림 표지판 게시 ● 용접·용단, 가설전기·전기공사, 밀폐공간 작업 관련 핵심 점검사항 등
공정별	● 기초공사→골조공사→내·외부 마감공사, 지붕공사 등 공정 진행에 따른 주요 사고사례, 핵심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 등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32

## 2022년 상반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 교육원 교육생 모집 안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모 및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국비무료 현장 맞춤형 건설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교육원에서는 2022년도 상반기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 및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은 참고하면 된다.

- 01 **교육과정** : 목공(건축·일반), 설비(배관·설계시공), 용접(특수·피복아크), 철근+비계, 타일+방수, 건축CAD 실무, 기술사 과정 등
- 02 **모집기간** : 2022년 1월부터 상시 모집 중
- 03 **교육기간** : 2022. 2월부터 (교육과정별 상이, 교육원 문의)
- 04 **교육대상** : 실업자, 구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고교·대학 졸업(예정)자 등
- 05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북구 만덕대로155번길 99-1(덕천동)]
- 06 **교육혜택**
  - 매월 훈련장려금 지급
  -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지원 등
- 07 **접수 및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051-330-8100~2)으로 문의
  - 홈페이지(<http://busancte.or.kr>) 참조



# 33

## 2021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안내

부산시회는 202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는 2022. 2. 15(화)까지 방문 및 인터넷 접수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의 경우 2022. 4. 15까지(개인의 경우 2022. 5. 31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접수 바람.

- 2021년 실적신고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신고업체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함.

### 2021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교육 동영상』안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대규모 행사 등은 백신접종 완료자 및 행사 참석 인원 제한으로 부득이하게 2021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 강습회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실적신고 교육 동영상』을 참고하여 202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능력평가 제도>

- 1차 실적신고 : 실적평가 → 기술능력평가 → 신인도평가
- 2차 실적신고(경영평가)
- 실적신고절차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안내

#### <실적신고 시스템(esingo.kosca.or.kr) 입력방법>

- 실적신고 홈페이지 : esingo.kosca.or.kr → 로그인(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 실적신고 동영상 가이드 영상시청 or 실적신고 가이드

#### <『2021년도 근로소득 인원조사서』작성방법>

- 동영상 자료 및 서식 작성요령 : 부산사회 홈페이지 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교육교재 → 근로소득 인원조사

### 01 주의사항

- 실적신고는 반드시 협회 실적시스템(<http://esingo.kosca.or.kr>) 작성·제출하여야 됨(수기제출 불가)
- 건설공사 실적신고 서류의 제출기한은 2022년 2월 15일까지임. 단, 재무제표에 한하여 2022년 4월 15일까지(개인업체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 불가
- 2021년도에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실적신고를 하여야만 시공능력평가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신고기간내에 접수한 내용(공사실적, 재무제표, 기술인 등) 이외에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접수기한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기성실적증명서【서식6-1】는 실적증명자(발주자 또는 수급인)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가 누락 없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됨.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포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비)과세표준증명원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각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결산재무제표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 건설공사 매출과 기타겸업 매출액으로 구분기장되어 있어야 함.
- 보유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되 반드시 (하)도급 받은 건설업종으로 건설공사 실적을 건별 입력(기재)함.

-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는 경우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실적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함.
-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공사를 도급·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종합공사로 신고해야 종합공사 실적 관리를 받을 수 있음.

## 02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 절차

- **실적신고 교육 동영상**
  - 실적신고 작성안내서 수령 및 실적신고 교육 동영상 숙지
- **실적신고서 온라인 작성(<http://esingo.kosca.or.kr>)**
  - 실적신고서 시스템 로그인(<http://esingo.kosca.or.kr>)
  - 실적신고 자료 입력(업체현황, 공사실적, 기술능력, 신인도, 통계조사 항목)
- **실적신고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 공사실적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 기성실적증명서 확인(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기술능력평가 증빙서류 준비
    - 건설기술인자격증 사본(기능사),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 등
    - 4대 사회보험 확인서류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필) 준비
    - 기술개발투자비지출확인서 등
  - 신인도평가 증빙서류
    - 신기술지정, 우수건설업체, 해외건설현장고용확인서 등
- **신고서류 접수 및 출력**
  - 온라인 접수 / 실적신고서류 출력 및 편철
  - 각종 증빙서류 첨부
  - 제출서류 및 미비서류 유무 확인, 납부 할 회비 확인
  - 협회 실적신고
    - 공사실적 : 2022년 2월 15(화)까지
    - \* 인터넷 신고 서류제출 : 방문 또는 우편 2022년 2월 15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재무제표 : 법인 2022년 4월 15일(개인 : 2022년 5월 31일)
- **공사실적 확정**
  - 공사실적 확정 및 증명발급 : 2022년 6월 2일(목)
- **경영상태평가 확정**
  - 경영상태평가 확정 및 증명발급 : 2022년 7월 1일(금)
-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2022년 7월 말(예정) (공시방법 : 협회 정보통신망)
  -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 2022년 8월 2일(월)부터

**0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방법**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sup>(1)</sup> + 경영평가액<sup>(2)</sup> + 기술능력평가액<sup>(3)</sup> ± 신인도평가액<sup>(4)</sup>】**

•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해당업종별 영위기간의 인정계수) × 70/100

※ 인정계수 : 1년 미만=1, 1년 이상 3년 미만=건설업영위월수/12, 3년 이상=3

※ 건설업영위월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함

※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3

- 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④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 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614호, 2019. 3. 26), 2019. 8. 1시행】  
-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

•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1) **실질자본금**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① 차입금의존도평점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 차입금의존도비율

【차입금의존도비율 = 차입금\* / 총자산 × 100】

② 이자보상비율평점 = 이자보상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100】

③ 자기자본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④ 매출액이익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 ÷ 업계전체가중평균

【매출액순이익율 = 법인세(소득세)차감전 순이익 / 매출액 × 100】

⑤ 총자본회전율평점 = 총자본회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 / 총자본 × 100】

● 참고사항 : 차입금 항목(예시)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관계회사단기차입금	관계회사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교환사채
단기사채	국민주택기금(차입)
단기용자금	금융리스미지급금
당좌차월	금융리스부채
어음차입금	금융리스장기차입금
유동성사채	사채
외화단기차입금	신주인수권부사채
유동성금융리스미지급금	외화금융리스부채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외화사채
유동성외화장기부채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외화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용자금
유동성장기채무	장기차입금
유동성외화장기차입금	전환사채
유동성전환사채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채무)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차관
가수금	가수금
위 계정과목외 차입금	위 계정과목외 차입금

$$\text{경영평점} = (\text{①차입금의존도평점} + \text{②이자보상비율평점} + \text{③자기자본비율평점} + \text{④매출액순이익률평점} + \text{⑤총자본회전율평점}) \div 5$$

- 이 경우 각 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 '3', -3 이하인 때에는 '-3'으로 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은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이하인 비율을 제외함**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한 때에는 '3'으로, -3 이하일 때에는 각각 '-3'으로 함
- 경영평점이 **0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0'**이 되도록 평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 미만인 때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3)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기술능력 평가액**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기술능력생산액}(\text{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인 1인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보유기술인수} \times 30/100) + (\text{퇴직공제납입금} \times 10) + \text{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1) **기술능력생산액**

-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함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인 1인당 평균생산액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
- 보유기술인수 : 매 연도말 현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수

**건설기술인 반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수 × 1인</li> <li>- 중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수 × 1.15인</li> <li>- 고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수 × 1.3인</li> <li>- 특급기술인 : 특급기술인 수 × 1.5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 기술인 수 × 1인</li> </ul>

-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614호, 2019. 3. 26), 2019. 8. 1시행】
  -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함.
  -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함.

(2) **퇴직공제 납입금 × 10**

-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

(3) **기술개발투자액**

-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인도 평가액**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음.

(1) **신기술의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함

**(2) 건설업 영위기간**

-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각 더함

**(3)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업체**

- 직전영업연도에 법제82조제1항1호·제2항제5호 제82조의2 및 법제83조제10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 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1호(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 제2항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기준재해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 직전영업연도중에 평균재해율의 1~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100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한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100을 뺀다.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5) 부도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6)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우수업체 : <2021. 8. 31 삭제>****(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

-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 고용인원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가 50~50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
-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 해외건설협회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 함.

**(8) 건설공사 실적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9) 상습체불업체**

-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10) 건설기술인교육 이수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인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음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

-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

**(1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 자(국토교통부령 제627호, 2019. 6. 19)【2020. 8. 1시행】**

- 제48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함.

구분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등급	가산비율
전문건설업체	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5/100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퍼센트 미만	2등급	4/100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3/100

※ 자세한 평가 방법은 p.117 『V.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도』 참조

**(13) 건설사업자가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2020. 8. 1시행】**

: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감리자 등의 확인서 제출

-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2020년 1월 1일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 기타**

-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음.
- (2) 20이상의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축한 건설산업자의 시공능력평가시 업종별·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3)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04 실적신고 인터넷 접속 방법

- 실적신고 시스템 접속(<http://esingo.kosca.or.kr>)
  - 공인인증서 또는 홈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시스템 사용 환경 】

Window10, Chrome 또는 Microsoft Edge, 네이버 웨일 등 사용 권장

- Internet Explorer(IE)SMS 단계별로 지원이 종료될 예정

•공사실적 관계서류(1차)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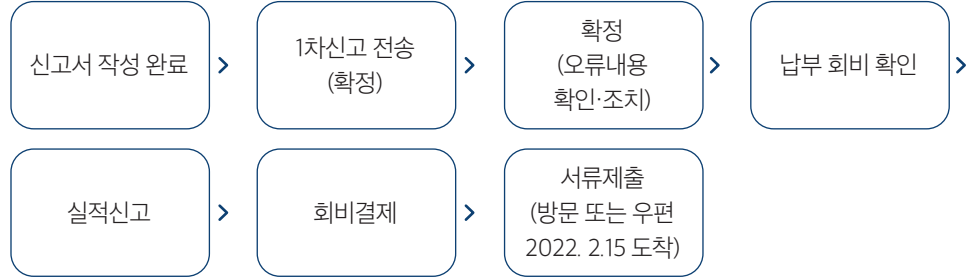
- 실적신고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실적접수, 회비납부내역 등을 휴대폰 SMS로 안내)
- 업체의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전문건설 이외 인·허가에 대한 사항 입력 (상호변경, 합병, 양수 등에 따라 상호,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된 경우)
- 기업회생 및 공동관리(개시일, 종결일, 사건번호 등)에 대한 사항 입력
- 업종별로 공사 실적내역(공사명, 계약일, 발주자, 계약액, 기성액 등)에 대한 사항 입력
  - ※ 직전연도분(2020년)도 및 직직연도분(2019년)의 전체 또는 일부공사 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실적만 입력해서 신고 가능, 중복 신고 불가
- 업체가 보유한 기술인에 관한 사항을 입력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인정되는 기술인으로서 2021. 12. 31 현재 자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임원이 기술인인 경우 포함, 일용 건설기술인은 제외)을 입력

- 경력건설근로자 창업우대
  - ※ 퇴직공제 가입경력 5년 이상, 공제부금 500일 이상 납부한 자가 건설업체를 설립한 경우 등록연도와 그 다음연도 시평에 한하여 보유기술인 현행 가중치에 2배 적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퇴직공제회에서 제공(입력 불필요)
- 국내인력의 해외건설현장 고용신고서 : 해외건설협회에서 제공(입력 불필요)
- 신기술, 우수건설업 지정,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내용 입력
- 시설·장비보유, 건설기술 보유현황에 대한 사항 입력(서식 출력 해당아님)
- 전문건설업 통계조사 일반사항(자본금, 창설년월) 입력(서식 출력 해당아님)



● 실적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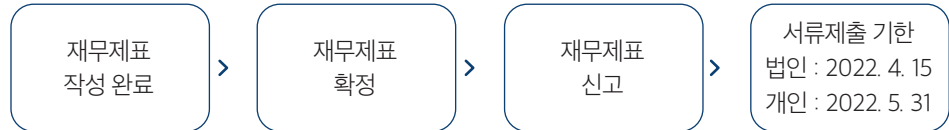


- 신고 완료 후 시스템에서 내용 수정 불가
- 실적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등기우편(또는 방문제출)으로 (2022. 2. 15 도착 분까지 유효) 제출

● 결산재무제표(2차신고) 신고 방법

- 실적신고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를 입력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 입력
- 총공사금액 1천5백만 원 이상인 공사로서 2021년에 완성된 공사를 공사현장별로 입력
- 전문건설업 통계조사 결산사항(인력고용, 급여 등) 입력

● 재무제표확정



34

2022년 시공능력평가  
주요 변경 내용

01 공사실적평가

● 건설공사 기성실적 제출서류 간소화

- 민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5백만 원 이하 건설공사는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실적 인정 (공공공사 원도급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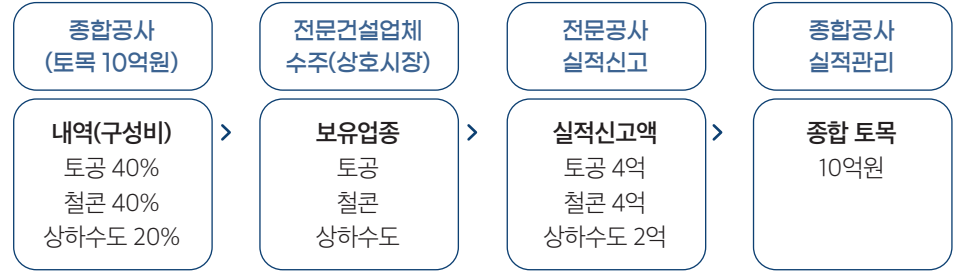
●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 변경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처리기간 즉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내역			
공사명		총공사금액	
		백만원	
현장 소재지(번지까지 기재)			
공사유형	주력분야	① 공사종류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 이하 생략 -			

- 전문건설사업자가 다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수주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전문업종 실적으로 인정하여 실적관리 및 시공능력평가

【종합공사 실적 별도 관리 : 실적신고 시스템 → 공사실적평가 → 기성실적신고(종합공사)】



: 공사용형, 주력분야 및 상호시장 진출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 구분하여 신고

• **직접시공 공사 가산비율 변경**

- 공공공사 중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70억 이상)를 직접시공한 경우 직접시공 합산 비율 확대 : 10% → 20%

• **공공발주공사의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및 예외적 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의 개정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금지 및 예외적 허용(※ 발주자 서면승낙·'21. 1월부터 공공발주 공사)됨에 따라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전문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의 경우 발주자 사전 서면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반시 행정처분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건설공사 실적 확정일자 변경 : 기존 7월 1일 → 6월 1일**

※ 2022년은 6월 2일 (2022. 6. 1 지방선거)

02 **신인도평가부분**

•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감산비율 확대**

- 상습체불 건설사업자로 발표(국토부, 고용노동부)된 경우 실적평가 중 연차별가중평균 비율의 감산 확대 : 2% → 30%

03 **전문업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 **대업종 및 주력분야별 시공능력 평가·공시(2022. 1. 1)**

대업종	주력 분야	주요 공사 종류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2) 포장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파일공사
나. 실내건축공사업	4) 실내건축공사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7) 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8) 습식·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9) 석공사	석공사
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 조경식재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대업종	주력 분야	주요 공사 종류
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2)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3) 구조물해체·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4) 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자. 철도·궤도공사업	15) 철도·궤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16) 철강구조물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카. 수중·준설공사업	17) 수중공사	수중공사
	18) 준설공사	준설공사
타. 승강기·삭도공사업	19) 승강기설치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20) 삭도설치공사	삭도설치·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 35

## 2022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안내

부산시회는 2022년도 사회보험 요율 및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 건강보험료율

년도	보험료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20	보수월액 × 6.67%	3.335	3.335
2021	보수월액 × 6.86%	3.43	3.43
2022	보수월액 × 6.99%	3.495	3.495

- 2022년도 사용자 부담 3.495%, 근로자 부담 3.495%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보험료의 12.27% (사용자·근로자 각각 부담)

### • 국민연금료율

년도	요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20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2021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2022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 2022년도 사용자 부담 4.5%, 근로자 부담 4.5%씩 각각 부담

###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2018	3,619,987원
2019	3,906,885원
2020	4,226,652원
2021	4,330,442원
2022	4,438,528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업별	보험료율	산정기준
실업급여 (공동 부담)	16/1,000 (1.6%)	사용자부담 8.0/1,000(0.8%) 근로자부담 8.0/1,000(0.8%)
	18/1,000 (1.8%)	사용자부담 9.0/1,000(0.9%) 근로자부담 9.0/1,000(0.9%)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2.5/1,000 (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 (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 (0.6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미해당
	8.5/1,000 (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미해당 기업 및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22. 7. 1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 1.8%로 0.2%p 인상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전년과 동일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건설공사(갑)	27 (30)	27 (30)	27 (30)	27 (30)	27 (30)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

● 최저임금

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일급(8h)	월급(209h)
2019	8,350	66,800	1,745,150
2020	8,590	68,720	1,795,310
2021	8,720	69,760	1,822,480
2022	9,160	73,280	1,914,440

- 최저임금은 2022.1.1 ~ 2022.12.31까지 적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0%(상여금), 2%(현금성 복리후생비) 초과분]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사업주 범위(공사실적액)	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
2018	75억 7천 5백만 원 이상	945천 원
2019	86억 8천 1백만 원 이상	1,048천 원
2020	86억 8천 1백만 원 이상	1,078천 원
2021	86억 8천 1백만 원 이상	1,094천 원
2022	98억 6천 3백만 원 이상	1,149천 원

-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 국가기관·공공기관(3.6%), 민간기업(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석면피해분담금률

년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피해분담금률	비고
2018	0.6/1,000	0.03/1,000	
2019	0.6/1,000	0.03/1,000	
2020	0.6/1,000	0.03/1,000	
2021	0.6/1,000	0.03/1,000	
2022	0.6/1,000	0.03/1,000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기준)

-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36

부산사회는 2022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37

##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시중노임단가) 안내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 산출근거로 활용되는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이 통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표·승인(제365004호) 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건설부문에 고용된 기능직종의 시중노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설공사 원가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함.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 **조사 기준기간** : 2021. 9. 1 ~ 9. 30
-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 실시
- **이용상의 주의사항**
  - (1)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 (2)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 (3) 직종번호 앞의 「\*」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 02 조사내용

- **평균임금현황**
  - (1) 전체직종 : 242,931원[2021년 하반기(235,815원) 대비 3.02% 증가]
  - (2) 일반공사 직종 : 231,044원(2021년도 하반기 : 223,499원)
  - (3) 기타 직종 : 245,273원(2021년도 하반기 : 239,470원)
- **직종별 노임단가** : 부산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참조

### 03 2022년도 상반기 노임적용시점 : 2022.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38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안내

부산시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주요내용

- 안전시설물 대상 8개 항목 신규반영
  - 보행자 및 차량통행 제한시설, 추락방지시설, 토공작업자 보호시설
- 철근가공 및 조립 투입품 현실화
  - 투입기준 규격을 시설물 유형별 Type를 적용하도록 제시
- 자재별 해체공사 항목 신설
  - 지붕(합석), 천장(텍스, 경량천장), 벽(조적, ALC, 경량벽), 바닥(타일, PVC계 바닥재) 등

### 02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개정 주요내용

- 현장조사를 통한 제·개정\* 및 최근 7개월 물가지수\*\* 반영
  - \* 가설공사(토목/건축), 토공사,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등 203공종
  - \*\* 1,492공종(생산자물가지수, 평균 노임지수 반영)

-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적용 기준 개선
  - 철근가공조립 적용규격 변경 및 보정기준 개선
- 공동주택 보정기준 신설
  - 공동주택의 동일 규격 반복시공 반영

**03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개정 주요내용**

- 유사공종별 군 평균증감율 반영 등 현실화\* 및 지수\*\* 반영 조정
  - \* 피복석투하, 콘크리트 양생 등 132공종
  - \*\* 185공종(생산자물가지수, 평균 노임지수 반영)
- 신규공종 신설\* 및 신규단가 작성
  - \* 등부표 설치·철거·유지관리, 블록 이적 및 트레일러적재 4공종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신기술·원가정보 →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에서 확인 가능하다.

# 39

## 2022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안내

부산사회는 2022년도 달라지는 건설업 노무 관련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기업에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 적용
-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으로 월소득 기준(220만원) 추가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력(E-9, H-2)은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
-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적용
  -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 (월 환산액 1,914,440원)
- 건설업 노무비율 전년도와 동일
  - 일반건설공사(원도급) : 총 공사금액의 27%
  - 하도급공사 : 하도급 공사금액의 30%
- 건설업 월평균보수액 4,438,528원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근로자 1.8% / 노무제공자 1.6% 적용
- 산재보험료율 3.7% 적용(전년도와 동일)
- 건설업 국민연금료율 9%(전년도와 동일)
- 건강보험료율 6.99%, 노인장기요양보험 12.27% 적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확대 적용
  -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원 이상 : `20.11.27 부터 시행
  -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 `22.7.1 부터 시행
  -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 `24.1.1 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추가연장근로가 `22.12.31까지 허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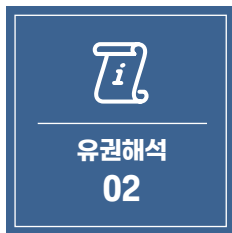
**Q** 01 \_\_\_\_\_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의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부과 가능 여부?

02 \_\_\_\_\_  
 산업집적법 관련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사무실로 건설업 등록 가능 여부?

**A** 01 \_\_\_\_\_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은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적법한 건물로서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다면 등록기준은 충족하며, 불법 건축물이거나 주택, 온실 등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이 아니라면 등록기준 위반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집적법 상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여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02 \_\_\_\_\_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사무실을 활용하여 건설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0700, 2021.12.14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관련**

**Q** 01 \_\_\_\_\_  
 부산시 ○○구에서 발주한 도로개설공사 시공 중 발주처의 원인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준공 전 2회(2014.4.14, 2014.7.8)에 간접비 발생액에 대한 금액표시 없이 간접경비를 청구하였음에도 발주기관에서 당초 계약준공금(2014.7.28.)만 지급

당사에서 준공금 수령 후 직접산정방식에 의거 간접비를 청구(2014.7.31) 하였는데 발주기관은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접경비 지급은 어렵다고 회신함에 따라 간접경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A** 01 \_\_\_\_\_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4'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 없이 준공대가 수령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의 분쟁이 생긴 경우라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3'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 2014.9.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Q** 판시사항

01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가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A** 판결요지

0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5항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은 제22조 제5항 후문에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제22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는 제2항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으로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도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험료 등 정산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편의상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31조 제1항 후문), '하도급계획의 제출'(제31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36조 제2항)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과 그 시행령 제26조의2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5, 2007. 10. 12., 이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3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그 문언의 내용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이지,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약

단순 가슴 방사선 사진으로는 놓치기 쉬운 암

# 왼쪽 어깨가 아팠는데 암이라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의료에서 진단방사선학은 지난 120여 년 이상 인류의 건강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진단은 물론이고 고에너지방사선을 이용한 종양 치료와 투시와 초음파 유도를 통한 스텐트 설치술, 간암 색전술 등이 포함되는 중재적 방사선학(Interventional Radiology)이라는 분야가 발전했고, 방사선(X선) 위주의 영상을 벗어나 초음파와 감마선, 자기공명영상, 분자 광학영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2006년 11월 30일에 국회의 인준을 받아 ‘진단방사선과’라는 이름을 ‘영상의학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핵의학(Nuclear Medicine) 영상도 영상의학의 한 부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핵의학 전문의 자격증과 함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면허를 추가로 획득하여야만 원활하게 핵의학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KOSCA Letter 22호의 건강코너에 이어서, 단순 가슴 방사선 영상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위치의 병변 두 번째로 CT와 PET/CT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상구암종(Pancoast tumor, Superior sulcus tumor) 사례를 소개합니다.



## 상구암종(Pancoast Tumor)이란 ?

미국의 영상의학과 의사인 Henry Pancoast가 1924년에 폐의 제일 윗부분(첨부)에서 발생한 폐암이 팔 신경 열기(brachial plexus)와 목가슴신경절(stellate ganglion)을 침범하여 Horner 증후군과 같은 증세를 일으키는 경우를 상구암종(Pancoast tumor)이라고 명명하였다.

동언어로 superior sulcus tumor라고도 하며, 주위 신경이나 혈관의 침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세를 보이므로 어깨 통증의 감별에 주의해야하는 질병이다.

흡연력이 중요한 단서이며, 임상 증세(동공수축, 무한증, 눈꺼풀처짐, 안면 부종, 청색증, 두경부 정맥 확장)의 빠른 진행과 늑막 통증(pleuritic pain)이 있을 때 의심해야 한다.

단순 방사선사진으로는 간과하기 쉬운 폐암의 일종이므로 이런 증세를 가진 환자에서는 가슴 CT나 PET/CT, MRI 등의 단층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는 까다로운 위치 탓에 화학 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한 뒤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Neoadjuvant treatment; 신보조 요법).



사례

J씨(59세 남자)는 왼쪽 어깨의 통증으로 한 달 이상 침 시술을 받아 왔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으로 근력이 쇠약해지는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두경부의 MRI(자기공명영상)로 오른쪽 시상부(thalamus)의 작은 아급성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어 뇌졸중을 의심하였고, 동시에 촬영한 단순 가슴 방사선 영상에서는 왼쪽 폐의 꼭대기 안쪽 부위로 음영이 증가된 것이 보였으며(그림 1의 왼쪽 화살표), 이어서 시행한 조영제 주입 가슴 CT에서 혼합된 음영의 종괴 덩어리가 왼쪽 폐첨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그림 1의 오른쪽 별표). 이 종괴는 늑막과 밀착되어 있었고, 주위 신경과 혈관을 둘러싸는 형태를 보여 영상만으로도 상구암종의 가능성이 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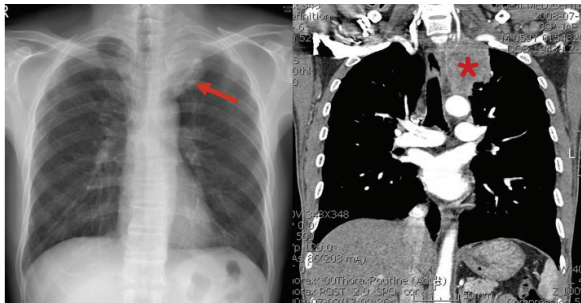


그림 1. 단순 가슴 방사선 영상(왼쪽)에서는 왼쪽 폐의 꼭대기 안쪽 부위로 음영이 증가된 것이 보이며, 조영제 주입 가슴 CT(오른쪽)의 시상면 영상에서 왼쪽 폐첨부의 혼합된 음영을 보이는 종괴 덩어리가 발견됨.

이런 경우도 종괴가 분명하지, 혹은 악성일 경우에는 다른 부위로 얼마나 어떻게 전이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PET/CT나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J씨도 F-18-FDG (fluorodeoxyglucose)라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주사 받은 뒤 PET/CT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림 2는 3차원 입체 MIP(Maximum intensity projection) 영상, 관상면과 시상면의 PET/CT 영상으로, 왼쪽 폐첨부에 화살표로 표시한 장경 7cm의 종괴가 보이고, 방사성동위원소의 섭취가 정상 조직의 섭취 평균치보다 10배 이상(최대표준섭취 계수; mSUV = 10.39)인 악성 종양의 형태였습니다.

J씨는 경피적 조직검사에서 중간정도로 분화된 선암(Adenocarcinoma)으로 확진되어,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법을 시행하였고, 대뇌로 전이되어 감마나이프 시술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J씨는 19세부터 하루 한 갑씩 4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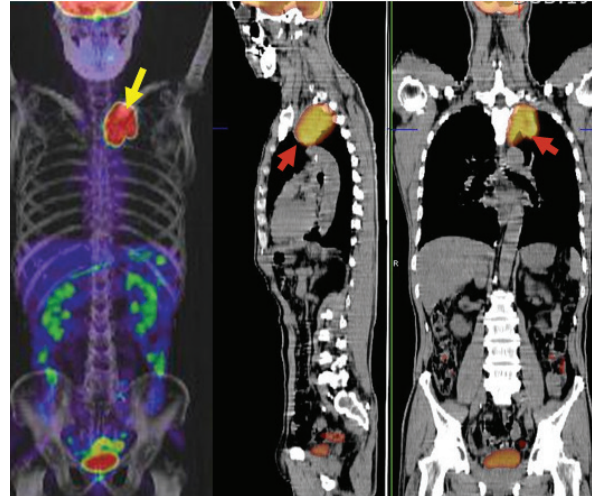


그림 2. 왼쪽부터 PET/CT의 3차원 입체 MIP(Maximum intensity projection) 영상, 관상면과 시상면 영상으로, 왼쪽 폐첨부에 화살표로 표시한 장경 7cm의 종괴 덩어리가 보이고, 방사성동위원소의 섭취가 정상 조직보다 10배 이상 높음.

상구암종은 신경이나 혈관의 침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세를 보이므로 어깨 통증의 감별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으로, 흡연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임상 증세로는 동공수축, 무한증, 눈꺼풀처짐, 안면 부종, 청색증, 두경부 정맥 확장 등의 빠른 진행과 늑막 통증(pleuritic pain)이 있을 때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 방사선 영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폐암의 일종이므로, 이런 증세를 가진 환자에서는 가슴 CT나 PET/CT, MRI 등의 단층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흡연력이 있는 사람이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오게 되어 CT와 PET/CT로 정확하게 진단된 상구암종의 경우입니다.

이 건강코너의 독자들에게 금연을 강조하기 위하여, 에릭시걸의 유명한 소설 '닥터스'에서 레지던트인 세드가 담배피우는 동료 의사 조엘에게 외치는 대사를 옮깁니다.

“조엘,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병실마다 담배를 피우는 게 자기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명해 주는 산 증거가 득시글거리는데 넌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냐구!”

아직도 흡연하시는 KOSCA Letter 독자들이 계시다면, 하루 빨리 금연하시어 암 발병도 줄이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무병장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 하도급 분쟁 해법

# 경미한 하자 이유로 대금 미지급은 위법

하도급공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이므로 수급사업자는 공사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완성해야 하고, 원사업자는 일의 완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 건설하도급계약의 법리에서 수급사업자가 일을 완성했다면 원사업자는 당연히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므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하자의 발생과는 무관하게 공사가 완성되면 항상 발생한다. 즉, 건설공사가 완성(준공)이 됐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다. 만일 건설공사가 미완성됐다면 공사대금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체상금의 부과 여부만 따지면 된다.

문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완성 후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다. 그동안 대법원은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하도급대금지급채무와 하자보수금채권의 상계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수급사업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채무에 대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8697 판결).

다만, 이런 경우에도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은 구별을 해야 한다. 하자 없이 공사를 수행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이행가능한 항변권이 있으므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실무상으로는 원사업자가 실제 하자가 아니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하자보수금 채무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액수보다 적다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해법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

2021. 12. 31

지역	업체 수	등록 수
중 구	31	64
동 구	64	109
서 구	25	29
사하구	81	122
영도구	26	43
동래구	201	255
남 구	115	157
금정구	253	383

지 역	업체 수	등록 수
연제구	153	234
해운대구	267	389
수영구	115	185
부산진구	172	240
북 구	92	119
사상구	143	180
강서구	263	370
기장군	225	335
<b>합 계</b>	<b>2,226</b>	<b>3,214</b>

### 부산 전문건설업체 변경 현황

2021. 10. 1 ~ 2021. 12. 31

#### 상호 변경

변경 전
(주)성주개발
(주)태백건설
(주)백역인테리어

변경 후
(주)강민건설
(주)광토건설
(주)백역건설

#### 대표자 변경

상 호	변경 전	변경 후
(주)강민건설	김문희	정현숙
광토이앤씨(주)	최영선	최정환
대진산업개발(주)	김경환, 김명찬	김경환
(주)동해건설	오은주	송여순
(주)리한건설	김호성	송상임
(주)미래건설산업	최평원	최성덕
(주)삼광건설	김기배	김현영
(주)세웅건설	장중배	장현확
신영이엔지(주)	유정임	김세나
(주)에코그린	김나은	김나은, 김한기
예림건설(주)	김정권	김도우
(주)와이지건설	이승현	이용권
용화개발(주)	박재선	이정혜

상 호	변경 전	변경 후
(주)유영토건	최기남	고금심
정진건설(주)	정미애	정정숙
(주)제이엠건축	임대식	박기형
지오인테리어(주)	홍순박	안재석
창일기업(주)	이병수	서민조
(주)창일피앤씨	김정숙	유주화
(주)팬스타트리	장태익, 박창길	장태익, 한동훈
(주)한일디앤씨	추희자	윤기철
(주)해금인테리어	김창복	최철수
형덕산업개발(주)	송덕근	정호철
(주)해도	남지혜	남혜성
(주)호산이엔지	정승환	정성문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1. 10. 1 ~ 2021. 12. 31

전출업체 현황
(주)디자인다함 (대표자: 윤병근, 광주)
로토텍다이아몬드(주) (대표자: 송재구, 경기도)
(주)서광이엔텍 (대표자: 박양우, 경남)
신화하이테크(주) (대표자: 문헌중, 박희성, 경남)
(주)월드디자인건축 (대표자: 김경희, 경남)
(주)정원건설 (대표자: 박정원, 울산)
(주)지영건설 (대표자: 황석진, 경남)
(주)진안 (대표자: 이원희, 대전)
(주)투인컴퍼니 (대표자: 이상근, 이춘성, 경남)
(주)해창 (대표자: 남중석, 경북)

전입업체 현황
(주)공사오공 (대표자: 김명민, 경북)
(주)누리세움 (대표자: 최태용, 경남)
(주)새진토건 (대표자: 이성규, 강원도)
(주)엘에이치건설 (대표자: 이철환, 전북)
위드엘리베이터(주) (대표자: 홍배선, 대구)
장원건설(주) (대표자: 강철영, 전북)
초석건설산업(주) (대표자: 박성진, 전북)
(주)하이브리드케어 (대표자: 배경욱, 경남)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1. 10. 1 ~ 2021. 12. 31



**거성개발(주) 최성욱**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6번길 12, 202호  
(초량동, 장호빌딩)

TEL | 051-442-0513

보유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광도설비 황정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에이동 3212호 (재송동, 센텀스카이버즈)

TEL | 051-784-2796

보유업종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주)그루디자인 박태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37  
(명지동, 더샵명지퍼스트월드)

TEL | 051-202-5575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주)그루디자인 김현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37  
(명지동, 더샵명지퍼스트월드)

TEL | 051-202-5575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대경기술(주) 임영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85번길 16

TEL | 051-722-0855

보유업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두원개발(주) 김평덕**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6길 28, 301호

TEL | 051-723-2550

보유업종 | **도장공사업**



**(주)루나플래닛 김루나**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3, 806호  
(대연동, 민석빌딩)

TEL | 051-628-0907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만덕건설(주) 양성훈**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331번길 16  
(안락동)

TEL | 051-553-9623  
보유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무한개발 이진욱**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5길 25, 1층  
(장안드림빌)

TEL | 051-728-8882  
보유업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범우컴퍼니 최정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663-1, 201호  
(녹산동)

TEL | 051-949-8831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서우건축(주) 마서연**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4, 1401호  
(온천동, 반도보라스카이뷰)

TEL | 051-912-5404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에스에스이엠(주) 류인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박동북로 132  
(강동동)

TEL | 051-972-4034  
보유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이화건축 김원주**

부산광역시 서구 태지로 159, 118동 103호  
(서대신동3가, 협성르네상스)

TEL | 051-711-3693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주)제이엠건축 박기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53, 3층 2호  
(양정동, 정윤빌딩)

TEL | 051-754-4474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주)조광건설 신수진**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3길 34-2,  
101호, 102호, 104호

TEL | 051-724-1552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준산업개발 박준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877번길 70-3, 2층  
(반송동)

TEL | 051-545-9334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진원건설 김채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173, 2층  
(학장동)

TEL | 051-315-3119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청암건설 박지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294번길 36, 1층  
(연산동)

TEL | 051-851-9490  
보유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태현이앤씨 홍순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455번길 8  
(모라동)

TEL | 051-934-0025  
보유업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해일건설 김경영**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55번길 14,  
105동 203호 (온천동, 동래효성 해링턴플레이스)

TEL | 051-502-7475  
보유업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윤학수 중앙회장은 11월 25일 김정우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 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학수 회장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 제고를 위해 전문과 종합공사의 업역구분 기준 등을 고려해 부대공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전문공사 발주를 확대해 줄 것과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대책 강구, 주휴수당 공사원가 반영, 이의신청 사유 및 계약 해지 사유 확대, 입찰참여자 설계서 교부 확대,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시 실적평가 기준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조달청장은 전문건설업계의 고통 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내년 2월 1일부로 4개 지점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온라인 업무 전담부서 운영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며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조합은 동일 광역시 내에 존재하는 2개 지점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지점 축소를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 운영도 효율화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 1일부터 부산북지점은 부산지점과, 서대구지점은 대구지점과, 동광주지점은 광주지점과 통합된다. 조합은 오프라인 지점을 축소하는 대신, 온라인 업무 시스템을 확대해 조합원의 불편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스마트심사팀을 신설해 업무처리 의 신속성과 집중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부산시회 2022년 1/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자	주요일정	비고
2022. 2. 15(화)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접수 마감	
2022. 3월 중	2022년 제1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예정)	

※ 상기 일정은 협회사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산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새단장! [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2022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부산시회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건설관련 다양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2022. 1. 10(월)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직관적인 화면 및 메뉴구성으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손안의 PC인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컴퓨터, 테블릿PC, 스마트폰 등 이용자의 접속환경과 관계없이 어떠한 모바일장치에서도 협회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원사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제증명발급시스템」과 「건설공사 실적신고시스템」을 전면 배치하고 전문건설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실시간 생방송으로 실시한 각종 강습회 영상 등도 협회 유튜브채널(KOSCA부산)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부산시회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회원사와의 소통 강화와 신속한 정보제공,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22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동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 2022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 건설산업관련법령(건설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 8시간 (09:00 ~ 18:00)
- **교육비용** : 집합교육 150,000원 / 이러닝교육 135,000원

####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팩스 02-3284-1066)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 **문의** : 건설교육센터 ☎ 02-3284-7076,1080

#### 04 2022년 온라인(이러닝)교육 일정(2~4월)

수강신청 마감일	학습기간		수료증발급
	부터	까지	
02. 03	02. 05	02. 11	02. 12
02. 07	02. 09	02. 15	02. 16
02. 10	02. 12	02. 18	02. 19
02. 17	02. 19	02. 25	02. 26
02. 24	02. 26	03. 04	03. 05
03. 03	03. 05	03. 11	03. 12
03. 10	03. 12	03. 18	03. 19
03. 21	03. 23	03. 29	03. 30
03. 24	03. 26	04. 01	04. 02
03. 31	04. 02	04. 08	04. 09
04. 07	04. 09	04. 15	04. 16
04. 11	04. 13	04. 19	04. 20
04. 21	04. 23	04. 29	04. 30

#### 05 2022년 집합교육 일정(2~4월)

일자	지역	장 소
02. 11	대구	대구무역회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4층 대회의실
02. 15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02. 18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제2연수관 109호
02. 25	전주	전주상공회의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7층 대회의실Ⅲ
03. 04	순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7, 1층 입체영상관
03. 11	창원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3층 나눔홀
03. 18	수원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5층 중회의실
03. 29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04. 01	의정부	신한컨벤션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109번길27, 에베에셀관 지하1층 컨벤션2홀
04. 08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5층 국제회의장
04. 15	천안	천안축구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2층 중세미나실
04. 19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04. 29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중회의실

## 동절기 중점 관리사항

동절기란?

동절기(冬節期)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겨울철' 또는 '겨울철 기간'을 의미하는 말로 지역에 따라 동절기의 시기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1월 ~ 2월 또는 12월 ~ 2월 사이의 기간을 의미함

동절기는 왜 위험한가요?

동절기에는 한파, 폭설, 강풍 및 동결 등의 기후적 특성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난방·전열·용접기구 사용 시 화재 발생, 콘크리트 구조물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 시 유해가스 중독 및 질식, 폭설, 강풍 등으로 인한 가설 구조물 붕괴 유발, 지반의 동결·팽창에 따른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지반의 균열 및 붕괴를 유발하기 때문

동절기 재해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나?

- 화재·폭발을 유발하는 난방·전열·용접기구 사용 사업장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 시 질식을 유발하는 밀폐공간
- 방동제 등의 음용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사용 현장
- 예상치 못한 폭설, 강풍, 한파 등으로 가설구조물의 전도, 침하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불충분에 따른 가설구조물 해체 시 붕괴
- 지반의 동결·팽창에 따른 비탈면, 흙막이 구조물의 붕괴

중점 관리사항

- 난방·전열기구, 용접 작업에 대한 화기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상태 이상 여부 확인
- 화재 발생에 대비한 근로자 화재 예방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소화시설 사용법, 대피로 인지 등)
-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 밀폐공간 작업 시 통풍 및 환기시설 작동 여부 확인
- 동절기 빈번히 사용하는 방동제 등의 유해물질관리(MSDS) 및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비상용 제설자재, 장비 확보 여부 및 비상 대기반 편성 및 운영 여부
- 예상치 못한 폭설·강풍 시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흙막이보공 등)의 변형 및 붕괴 예상 여부
-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

## 폭설, 강풍 및 결빙

### 위험요인

- 폭설로 인해 작업발판, 통로 등의 가설구조물이 넘어지거나 변형되어 넘어짐 또는 떨어짐
- 강설 또는 강우 후 결빙구간에서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넘어짐 또는 떨어짐
- 혹한으로 인한 건설장비 주행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작업자 끼임
- 강풍으로 인해 자재에 맞음(낙하·비래)



### 안전대책

-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주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조치 실시
-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쌓인 눈 제거
  - 눈이 계속해서 내릴 경우 아래 부분이 다져지게 되므로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눈의 밀도와 무게는 매우 커지게 됨
  - 특히 거푸집·철근조립 후 눈이 쌓인 경우 하중이 증가하여 붕괴 위험요인이 되며 콘크리트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 낙하물방지망과 방호선반위에 쌓인 눈은 즉시 제거하거나 하부에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



- 비상용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
  - 폭설 등 대비 긴급 동원장비 및 비상용 자재 비치
- 가설도로의 요철부분은 평탄하게 정비하고 급경사 지역에는 모래함 또는 염화칼슘함을 설치하고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 장비 및 차량 등의 스노우 체인, 부동액보충 등 월동장비를 점검하고 특히 산간지역의 건설현장에서는 비상용 유류, 통신시설 및 비상식량 등을 확보
- 공사 중인 집수정이나 맨홀 등에는 고인물을 빼고 눈이나 비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
-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부분은 결빙에 대비하여 되메우기 작업을 하거나 모래 등을 살포하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 전도 및 추락재해 예방
-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기준 준수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해체, 수리, 점검작업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 순간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
- 강풍(10m/sec이상)을 동반한 폭설 시 고소작업을 중지하고, 야적된 자재는 결속
- 철골공사의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이상의 경우 작업 중지



# 역사의 애환이 서린 영도대교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돼있는 영도대교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교량으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도개교다.  
전쟁의 이픔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영도대교는 역사와 현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글 정해린 사진 부산시



## 국내 유일 도개교

길이 214.63m, 너비 18.3m, 높이 7.2m의 영도대교는 일제 강점기인 1931년에 공사를 시작해 1934년 11월 23일 준공 됐다. 국내 최초의 연륙교(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유일한 일엽식 도개교(돛이나 굴뚝이 높은 큰 배가 다리에 걸리지 않고 그 밑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상판을 들어주는 기능을 가진 교량)인 영도대교는 일제가 한반도 자원의 수탈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한 것이었다. 과거에 하루 7차례씩 영도대교 아래를 지나는 선박을 위해 다리가 올라가는 장 관이 연출되며 부산 최고의 명물로 손꼽혔으나, 영도의 인구증가 및 교통난 등으로 인해 1966년 9월 1일에 도개 기능이 중단됐다. 2006년 11월에 들어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적 건축물로 평가돼 부산시 기념물 제56호로 지정됐다.

## 눈물을 간직한 영도대교의 역사

영도대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려있는 애환의 다리다. 영도대교는 1934년 개통되기까지 수많은 한국인이 공사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진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는 막연한 약속을 기억하며 모여든 피난민들로 영도다리 주변은 언제나 인산인해였다. 하지만 도시가 커지면서 도개 기능은 점차 축소되어 갔고, 개통 당시 7차례까지 들어 올려 졌던 상판의 도개 횟수가 2차례로 줄었다. 1966년에는 상수도관 연결과 교통량 증가 등의 이유로 9월 1일부터 고정식다리로 변경됐으며, 2003년에는 재난 위험 등급 판정을 받으며 해체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에 따라 다리는 철거 대신 해체 후 복원 결정이 내려졌다. 2010년부터 시작한 공사 끝에 영도대교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어진 동양 최대 규모의 일엽식 도개 교량으로 탈바꿈됐다.

## 43년 만에 다시 도개하다

2013년 11월 27일은 부산 영도다리의 상판이 다시 올라간 기념적인 날이다. 1966년 9월 마지막 도개를 끝으로 고정식 다리로 바뀐 지 47년 만이었다. 27일 오후 중구 남포동 자갈치 일대에서 열린 영도대교 개통식에는 수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돌아온 영도대교를 반겼다. 이렇게 역사의 애환이 서린 영도대교를 기념하기 위해 영도대교 축제도 개최되고 있다. 부산의 근대화유산인 영도대교를 소재로 한 이 축제는 전국 유일의 다리축제로서, 47년 만에 도개교로 다시 태어난 영도다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영도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개최되고 있다.



#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는  
독일 최대의 변화가로 유명한 쿠담 거리에 위치한다.  
'썩은 이빨'이라고도 불리는 이 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입은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글 정해린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는 카이저 빌헬름 2세가 독일을 통  
일한 첫 번째 황제, 카이저 빌헬름 1세에게 경의를 표하며  
1895년에 세운 교회로 1891년부터 1895년까지 4년여에 걸  
쳐 신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다. 한 번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이며 화려한 모자이크와 신  
로마네스크 양식의 아름다운 교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에 폭격으로 첨탑이 파괴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모습 그대  
로 보존되고 있다. 폭격을 맞은 모습이 마치 썩은 치아처럼  
보여 현지인들은 '충치'라는 애칭으로도 부른다고 한다.

이렇게 파괴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  
전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의미  
였다. 손상된 교회의 일부를 무너진 모습대로 유지하는 가  
운데 바로 옆에 핵사곤형의 신교회와 종탑을 세웠고, 베를  
린의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교회 내부에서는 모자이크로 장식된 천장과 나치로부터 희  
생당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 정교회가 기증한 십  
자가를 볼 수 있다. 내부 공간은 단출한 편이며 실제 예배  
는 본당 외부에 있는 예배당에서 이루어진다. 예배당을 포  
함해 본당을 둘러싼 4개의 건물을 신관으로 부르는데 실제  
교회의 기능은 모두 신관에서 대신한다.

신관은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에곤 아이어만  
(Egon Eiermann)에 의해 설계됐다. 파란색과 빨간색, 노란  
색 등 다채로운 색깔의 스테인드글라스와 벌집 모양의 콘  
크리트 벽으로 이루어진 신관과 부서진 채 솟아있는 본당  
의 첨탑의 조화가 이색적이다. 푸른빛을 띠는 스테인드글  
라스로 둘러싸여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신  
관의 내부도 볼만하다. 구교회와 신교회는 서로 다른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꼭 들어가 보는 것이 좋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 Healing Movie

잔잔한 여운과 따뜻한 감동을 남기는 영화는 메말랐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생각을 환기시킨다.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를 찾아 줄 흥미롭고 감동적인 영화를 소개한다.



## 싱2계더

개봉 2022.01.05 | 감독 가스 제닝스  
출연 매튜 맥커너히, 리즈 위더스푼, 스칼릿 조핸슨

### 더 큰 꿈을 향해 한계를 극복하다

귀에 익숙한 팝송이 잔뜩 들어간 뮤지컬 애니메이션 <싱>의 후속작인 이 작품은 꿈만 같은 레드 쇼어 시티에서의 쇼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문 버스터와 단원들의 이야기다. 대국민 오디션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이루고 있는 버스터 문과 크루들. 이들은 레드 쇼어 시티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상 최고의 쇼가 펼쳐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버스터 문과 크루들은 도전에 나선다. 그러나 최고의 스테이지에 서기 위한 경쟁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다. 이에 버스터 문은 완벽한 라이브를 위해 종적을 감춘 레전드 뮤지션 클레이를 캐스팅하겠다는 파격 선언을 하는데! 과연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 클리포드 더 빅 레드 독

개봉 2022.01.12 | 감독 윌트 베키  
출연 다비 캠프, 잭 화이트홀, 존 클리즈

### 전 세계를 사로잡은 슈퍼 강아지

뉴욕의 아파트로 이사 온 12살 소녀 에밀리. 에밀리의 어머니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에밀리를 철없는 삼촌 케이시에게 맡기고 출장을 떠난다. 그러던 어느 날 마법 동물 구조 센터를 지나던 에밀리는 운명처럼 작고 빨간 강아지를 만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함께하게 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작고 빨간 강아지 클리포드는 하루아침에 3M가 넘게 커져버려 순식간에 뉴욕의 유명인사가 되어버린다. 갑자기 유명해진 클리포드를 본 유전자 기업들은 클리포드를 유전학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눈독을 들인다. 에밀리는 위험에 빠진 클리포드를 기업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빨간 강아지 클리포드의 놀라운 모험이 시작된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 Healing Book

하루하루를 챗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 불편한 편의점

1

김호연 | 나무옆의자 | 14,000원

<망원동 브라더스>의 작가 김호연의 동네이야기 시즌 2다. 청파동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의 속내와 희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냈다. <망원동 브라더스>에서 망원동이라는 공간을 잘 활용해 유쾌한 재미와 공감을 이끌어냈던 이번에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인 청파동을 생생하게 포착해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동네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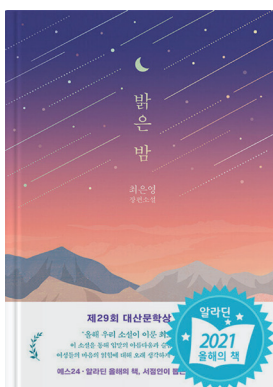


## 거꾸로 읽는 세계사

2

유시민 | 돌베개 | 17,500원

1988년 초판 출간 이후 스테디셀러로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전면개정판이다. 책은 쉽고 재미있게 세계사 공부의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지식소매상 유시민만의 스토리텔링은 가감 없이 발휘되며, 짧게는 20년, 길게는 100년 넘게 진행된 일련의 일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간다. 이번 책에서는 1995년 첫 번째 개정판에서 다룬 총 14가지 주제 가운데 '미완의 혁명 4.19'와 '일본의 역사왜곡'을 덜어 내며 총 11가지 주제를 살렸다.



## 밝은 밤

3

최은영 | 문학동네 | 14,500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와 사려 깊은 문장, 그리고 그 안에 자리한 뜨거운 문제의식으로 등단 이후 줄곧 폭넓은 독자의 지지와 문학적 조명을 두루 받고 있는 작가 최은영의 첫 장편소설이다. 작가는 2020년 봄부터 2020년 겨울까지 고박 일 년 동안 계간 <문학동네>에 연재한 작품을 공들여 다듬은 끝에 이 작품을 선보였다. 작품은 작가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증조모-할머니-엄마-나'로 이어지는 4대의 삶을 비추며 자연스럽게 백 년의 시간을 관통한다.

※ 베스트셀러 순위는 '알라딘'의 2022년 1월 둘째 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친환경 꿀팁

기후 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로웨이스트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러 캠페인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팁을 소개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주방 세제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합쳐진 합성 세제이며, 여기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다. 인공적으로 만든 계면활성제는 미생물로 분해가 되지 않아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을 오염시킨다. 기름때가 묻은 그릇이나 프라이팬을 닦을 때 특히 많은 양의 세제가 사용된다. 이 때 세제 대신 기름기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면 좋다. 기름이 많이 묻은 프라이팬을 닦을 때 물 적당량과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프라이팬에 넣고 끓인 후 흐르는 물에 가볍게 세척해주면 기름기를 수월하게 제거할 수 있으니 세제 사용을 줄여보자.

01



02

신발장이나 옷장 등 수납장 안에 냄새를 잡기 위해 흔히 방향제를 사용한다. 방향제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으니 바로 천연 방향제인 커피 찌꺼기다. 커피 찌꺼기를 바짝 말려 냉장고나 신발장 등에 넣어 두면 습기와 잡냄새를 잡을 수 있으며, 천 주머니에 넣어 자동차나 화장실 등에 걸어둬도 좋다. 이외에도 커피 찌꺼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커피 찌꺼기는 식물에도 좋은 비료가 된다. 주의할 점은 비료로 주기 전에 프라이팬에 한 번 볶아 수분을 완벽히 제거해 줘야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 커피 찌꺼기에 흑설탕과 페이스 오일을 넣어 각질제거제로 활용할 수도 있다.

03

공기가 건조해지는 겨울이나 봄이 되면 피부도 함께 건조해진다. 가습기를 구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천연 가습기의 역할을 하는 달걀껍질을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달걀껍질의 미세한 구멍을 활용하면 천연 가습기 효과를 낼 수 있다. 달걀의 윗부분에 작은 구멍을 내어 내용물을 붓고 껍질을 깨끗이 씻어 물을 채워두면 가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대로 껍질을 잘게 부수어 종이컵에 담아 옷장 등에 넣어두면 제습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반찬과 간식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달걀껍질을 한번 더 활용하고 버릴 수 있으니, 환경도 지키고 촉촉함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다.





## 내 몸을 지켜주는 음식

# 슈퍼푸드 사전

건강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일 섭취하는 음식도 꼭 신경 써야 한다.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꾸준히 먹으면 몸에 좋은 슈퍼 푸드를 소개한다.



### 비타민 덩어리,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겨자과에 속하는 짙은 녹색채소로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생성 전 단계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 쌓인 유해산소를 없애 노화와 암, 심장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브로콜리 100g에는 비타민 C가 98mg이 들어 있는데 이는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따라서 브로콜리 두세 송이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고혈압 위험을 낮춰주는 칼륨이 100g당 370mg 들어 있으며, 엽산도 포함되어 있어 임신부의 기형아 출산 위험을 낮추고 빈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열량이 100g당 28kcal로 매우 체중 감량을 위해 식이요법 중인 사람에게도 좋다. 브로콜리의 줄기에는 영양분이 많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므로 버리지 말고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기름에 볶거나 기름이 포함된 드레싱을 곁들여 먹으면 비타민 A의 흡수력이 높아지니 참고하자.

### 숲 속의 버터, 아보카도

‘숲속의 버터’로 불리는 아보카도는 대표적인 웰빙 식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아보카도 약 200g에는 지방 30g, 단백질 4g, 식이섬유 14g 등이 함유돼 있으며, 비타민 B군·C·E·K 등 다양한 비타민과 마그네슘·칼륨 등도 풍부하다. 특히 칼륨은 혈압을 조절해 고혈압과 뇌졸중 예방을 돕는다. 브로콜리는 장 건강에도 이롭다. 아보카도에 든 식이섬유가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과체중 성인 16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2주간 매일 아보카도를 175g(남성) 또는 140g(여성) 섭취한 사람의 장내 세균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다. 또한 아보카도에 들어 있는 비타민·미네랄·건강한 지방·식이섬유는 모두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아보카도가 심장에 부담을 주는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여럿 나와 있다. 카로티노이드·비타민 C·비타민 E·폴리페놀 등 항산화·항염증 성분이 풍부한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체의 항산화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실내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 식물 키우기

집에서 홀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꾸준히 유행하면서 미세먼지 제거와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 키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식물 키우기에 도전해 보자.

글 정해린

## 식물을 위한 환경 갖추기

식물을 구매하기 전, 먼저 식물을 키울 환경의 빛과 온도, 습도, 환기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다수의 식물은 10°C에서 25°C 사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10도 이상의 적정 온도를 갖춰야 한다. 만약 식물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온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다. 이럴 때는 해가 잘 들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보도록 하자.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온도를 유지하는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너무 과습하거나 건조한 곳은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니 기억하자.

## 나에게 맞는 식물 고르기

환경을 갖췄다면 이제 어떤 식물을 키울지 정해야 한다. 초보 가드너라면 키우기 수월한 식물부터 도전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공기 정화 식물에는 스킨답서스와 부귀수, 스파티필럼, 안스리움, 아글라오네마 등이 있다. 스킨답서스는 병해충에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강해 실내에서도 무난하게 잘 자라는 종으로,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우수하고 수경재배도 가능하다. 빨간 잎이 눈길을 사로잡는 안스리움 또한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식물이며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있다. '해피트리'라고도 불리는 부귀수는 음이온 방출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다음으로 필요한 기본 도구에는 물뿌리개와 원예가위, 작은 모종삽 등이 있다. 물뿌리개는 화분의 흙을 골고루 충분히 적시기 위해 필요하며, 식물이 자라면 줄기나 이파리를 정리할 때 원예용 가위가 있으면 좋다. 식물을 처음 키운다면 작은 모종삽도 필수로 갖추는 것이 좋다.

## 초보 가드너가 주의해야 할 사항

식물에 병충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꽃가게나 원예 자재상에 가서 식물에 증상에 따른 약을 받아와 바로 치료해 주는 것이 좋다. 통풍이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봄과 가을에 비료를 주면 더욱 건강하게 자란다. 계절에 따른 주의사항도 있다. 봄은 식물의 성장기로 물과 비료를 주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여름에는 강한 빛은 피하고 시원한 물을 주는 것이 좋으며, 겨울에는 보다 따뜻하고 빛이 잘 들어오는 장소로 화분을 옮겨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식물이 갑자기 성장해서 화분이 작아졌다거나 한 화분에서 2년 이상 키웠다면 흙이 영양분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화분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다.



## 틈날 때 간단하게 배우는



틈새 시간을 이용해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외국어 회화를 소개한다.  
이번호에서는 태국 사람과 만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법을 알아보자.

### 태국어 기초 인사말

상황	인사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ะ: 싸왓디카
만나서 반갑습니다	ยินดีที่ได้รู้จักค่ะ: 인디티다이루짜카
감사합니다	ขอบคุณค่ะ: 컵쿤카
미안합니다	ขอโทษค่ะ: 커툏카
관찮습니다, 천만에요	ไม่เป็นไรค่ะ: 마이뵘라이카

### 태국 사람과 만났을 때, 참고하세요!

#### TIP. 01

태국은 군주제 국가로 태국 왕실은 오랜 시간 굳건한 권위를 지켜왔다. 태국 국민들은 국가의 독립을 지켜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왕과 왕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태국인 앞에서는 무심코 왕실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 TIP. 03

태국 사람을 만났다면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와 같이 양 손바닥을 합장한 자세로 목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손을 가지런히 붙이고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면 된다. 목례를 할 때는 손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하고 손윗사람은 같은 자세로 이에 응답하는 것이 예의바른 행동이다.

#### TIP. 02

전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는 불교국가인 태국에서는 왕궁과 사원이 가장 신성한 장소다. 태국 내의 모든 불상은 크든지 작든지, 또 오래된 것이든 새 것이든 모두 신성하게 여겨진다. 누구든지 사진을 찍기 위해 불상에 올라간다거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 TIP. 04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오래 쳐다보는 행동은 무례한 행동이나 싸움을 거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또한 태국 사람들은 특히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친밀함을 표하는 행동이라도 삼가는 것이 좋다. 고의건 아니건 상대방의 머리를 건드리게 됐다면 즉시 사과하자.





##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

도서지역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주)동양창호 최정희 대리  
창민토건(주) 김은주 대표

이오건설(주) **이성이** 주임



다양한 건설산업정보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속 유용한 꿀팁 자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요긴하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주)흥덕건설 **박강희** 과장



늘 귀중한 정보 제공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딱딱할 수 있는 건설법령관련 내용만 있는게 아니라 건강·취미 정보도 같이 확인할 수 있어 좋네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시신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Q**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하고 있으며, 3억 원 미만의 동일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 또는 인접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공사현장에 배치(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2개현장까지 중복배치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일자 : 2021. 12. 28부터)에서는 5억 원 미만인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1명의 건설기술인을 최대 몇 개 현장까지 중복배치 가능토록 개정되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2022. 2. 28(월)까지 응모**하시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정답자에 한해 추첨 증정)



# 사고사망 *Down*, 건강보호 *UP* 사내 안내방송 가이드



안내방송 음원파일은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안전보건자료실'에서 '음원'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수시로 송출하여 작업자 주의 환기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사망 예방

## 공통

### 필수 보호구 착용



현장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 안내입니다.

추락, 낙하 등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작업, 약속해주세요!

### 충돌재해 예방



하역기계 또는 건설기계 작업 시 충돌재해 예방 안전수칙입니다.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수나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작업자는 기계 작업반경 내에 출입하지 마시고, 정해진 통로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작업, 약속해주세요!

### 밀폐공간 질식예방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자 안전수칙입니다.

작업 전과 작업 중에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용 보호구 착용을 잊지 마시고, 구조작업 시에도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작업, 약속해주세요!

## 건설업

### 추락재해 예방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관리자는 개구부, 단부 등에 추락위험 방지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안전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작업, 약속해주세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향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